

310.111
동14-

1995년기준 광공업통계조사

조 사 요 령 서

1996. 2



통 계 청

~~B005098~~
B82114

목 차

I .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의 법적근거	3
3. 조사연혁	3
4. 조사체계	4
5. 조사기간	4
6. 조사범위 및 대상	4
7. 조사단위	15
8. 조사방법	15
9. 조사표 종류	16
10. 조사사항	16
11. 조사표 회수, 내검 및 조사표 제출	18
12. 조사결과의 공표	18
II . 조사준비 및 실지조사	19
1. 조사업무의 실시순서	19
2. 조사준비	20
3. 실지조사	30
4. 조사지도	31
III . 조사표 작성요령	34
1. 조사표 I (5인이상 광공업사업체)	34
2. 조사표 II (광공업 본사사업체)	68

Ⅳ. 사업체명부 종류 및 사업체고유번호 부여요령 ..	76
1. 사업체명부 종류	76
2. 사업체명부의 구성내용	76
3. 정리 및 보완요령	77
Ⅴ. 조사결과 집계표(조사표 I)	83
Ⅵ. 추가 및 전출사업체 명부 작성	88
1. 작성기관 및 대상	88
2. 기입요령	88
Ⅶ. 내용심사 총괄표	90
Ⅷ. 기타 사항	91
1. 조사용품	91
2. 각종 서식작성시 유의사항	91

< 부 록 >

사업체 결산서 과목과 조사항목 대비표

I. 대차대조표(보고식)	95
II. 손익계산서	104
III. 제조원가 명세서	109
IV. 기타(부속 명세서) 참고사항	111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생산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경제정책수립 및 시책의 효과분석,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자료와 광공업 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조사결과의 주요용도

- 가. 국가 및 지역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나. 광공업부문 관련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자료
- 다. 광공업 관련 주요 경제지표 편제를 위한 기초자료 (GNP 추계 , 지역소득 추계 , 산업연관표 작성)
- 라. 지역별 경제지표 개발·확충에 필요한 기초 자료
- 마. 광공업 생산활동 실태 및 구조변동 등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
- 바. 광·공산품 생산 및 출하실적을 파악하여 물자 수급 동향 자료로 활용
- 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영계획 수립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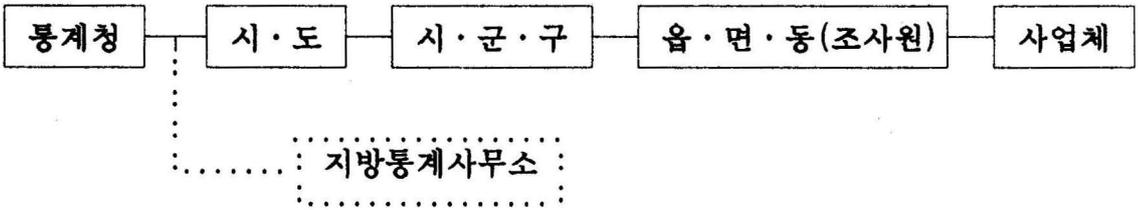
2. 조사의 법적근거

통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10109)

3. 조사연혁

1967년기준의 제1회조사 실시이후 매년실시하여 금년이 제23차 조사이다.
(3, 8자로 끝나는 연도는 산업총조사로 실시)

4. 조사체계



5. 조사기간

- 가. 조사 기준일 : 1995. 12. 31 현재
- 나. 조사대상기간 : 1995. 1. 1 ~ 1995. 12. 31(1년간)
- 다. 조사실시기간 : 1996. 5. 1 ~ 1996. 5. 31(1개월간)

6. 조사범위 및 대상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중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1995. 12. 31 현재 종사자수가 5인이상이거나
1995년 조업기간중 월평균종사자수가 5인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나. 광업과 제조업의 정의

(1) 광업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천연광물(무연탄, 석재, 자갈, 모래, 소금 등)을 채굴, 채취, 추출하거나 무연탄류를 제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간단한 손질 및 품질개선 활동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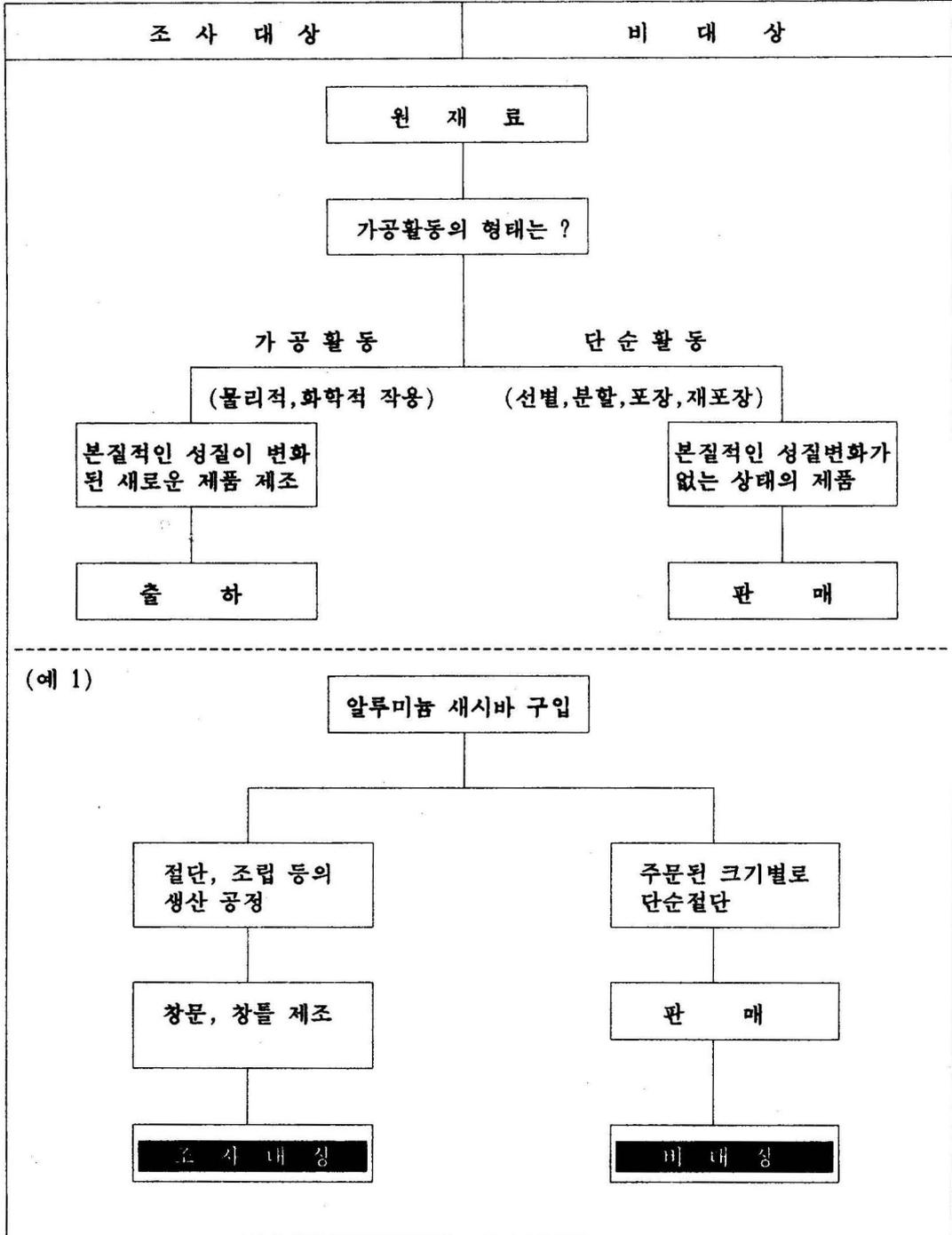
(2) 제조업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공간과 노동력을 확보하고 기계 및 장비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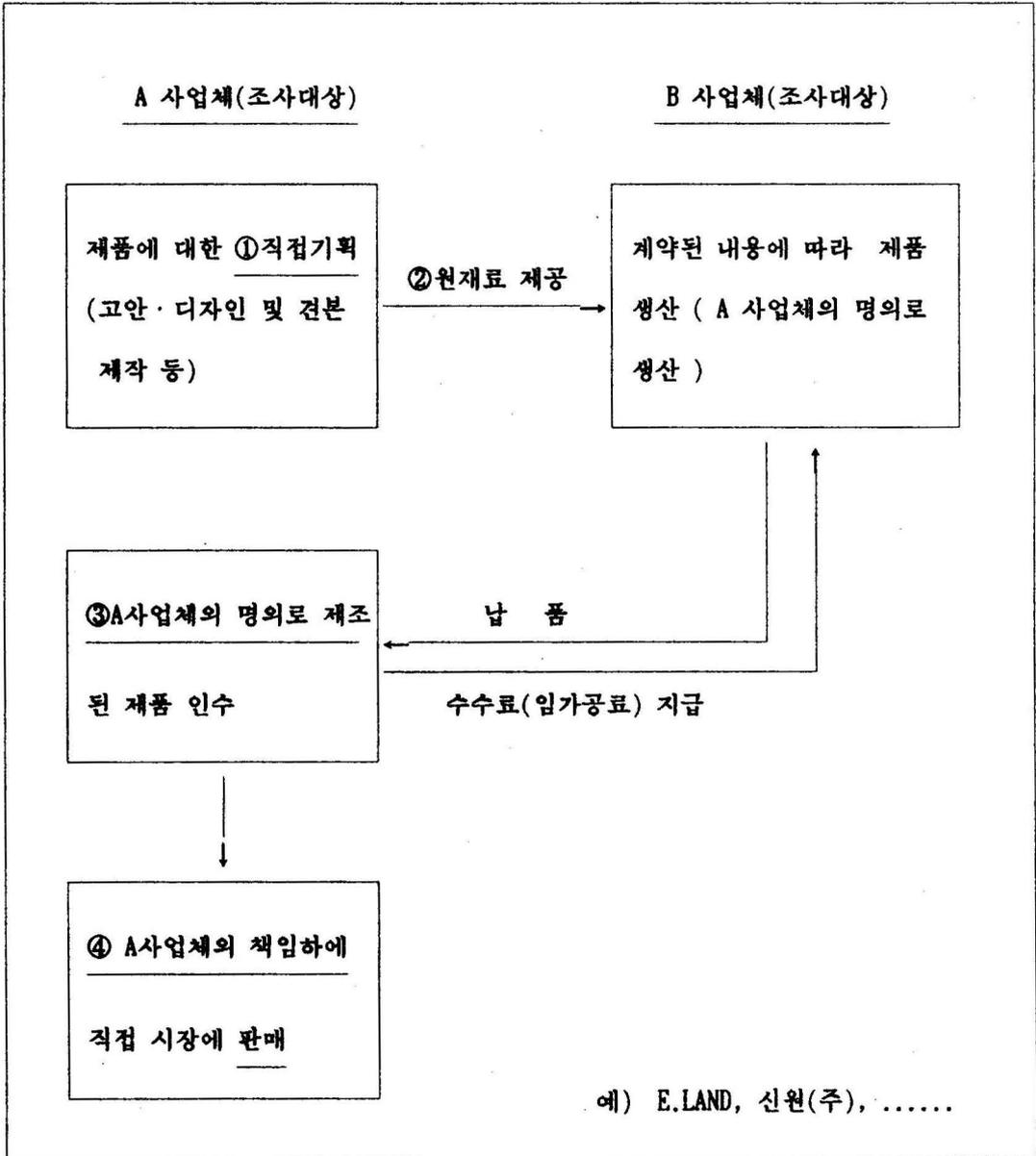
< 참고 > 제조시설의 보유여부에 따른 제조업의 정의

- 제조시설을 보유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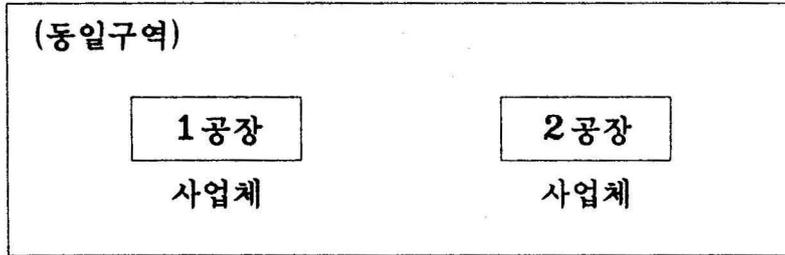
-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o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A사업체의 경우는 제조시설이 없더라도 조사 대상(제조업)임.



o 신문사, 출판사는 제조시설 유·무에 관계없이 조사대상(제조업)임.

예)



※ 사업체의 자가창고, 차고, 수리소, 제품검사(실험)실 등이 별도의 장소에서 모생산단위(사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보조단위는 모생산단위(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함

라. 광공업과 타산업과의 관계

- 겸업사업체

- 광공업활동 실적만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임.
- 광공업활동 실적만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겸업하고 있는 산업중 광공업활동에 투입된 각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 자본금 및 출자금,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유형고정자산 등을 조사한다.

- 농업·수협업 및 임업과의 관계

제조업(조사대상)	비제조업(비대상)
· 농원, 농장에서 자가채취 또는 재배한 생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 처리하는 경우, 별개의 시설과 전문적인 상용근로자가 있으면 제조업으로서 조사대상임	· 자가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개인이 제조, 가공하는 경우, 별개의 사업체로 구분 할 수 없으면 비대상임 · 육림업, 벌목업과 단순한 목재절단업은 임업이므로 비대상임

- 어업과의 관계

제조업(조사대상)	비제조업(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어업활동은 하지 않으나 포획, 채취한 수산물을 별도의 공장이나 공장형태의 선박에서 상용종사자를 두고 가공처리활동을 하는 경우, 어업활동과 분리하여 독립사업체(별도 결산)로 파악되면 조사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으로 포획, 채취한 어류를 어선내에서 종사자를 두지않고 직접 가공하는 경우 비대상 · 원양선에서 포획한 어류를 받아 인근 바다위에 있는 가공선이 가공활동을 하는 경우도 비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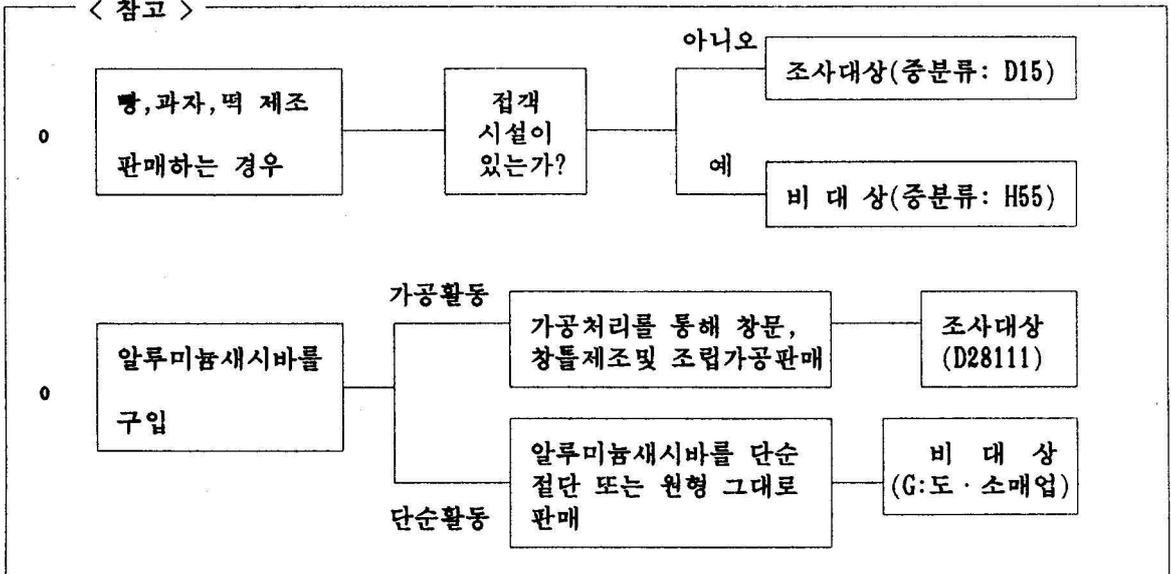
- 건설업과의 관계

제조업(조사대상)	비제조업(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가 제조한 조립식건물의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 장비등을 제조하여 직접 조립, 설치 하는 경우, 전체활동을 제조업으로 본다. 그러나 분리파악할 수 있으면 조립설치분은 제외하여야 함 · 선박해체는 제조업으로 35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한 교량, 저장 및 창고설비, 엘리베이터, 중앙난방기, 연관장치 등의 건물조직과 구조물의 구성품등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가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으면 이 부서는 조사에서 제외 · 광업권개발 또는 채굴준비 공사활동은 건설업 · 건물해체는 건설업

- 도·소매업과의 관계

제조업(조사대상)	비제조업(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빵·과자, 떡 등을 제조하여 대리점 또는 도·소매업자 등에 판매하는 경우(접객시설이 없을때) · 양복점, 양화점, 양장점 등 개인의 주문에 의한 제조를 주로 하는 경우(자가제조가 큰 경우) · 알루미늄새시바를 구입하여 창문 및 창틀을 제조 또는 조립 가공하는 경우(P.5 참조) · 자기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 하지 않고,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상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토록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자기책임하에서 직접판매 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조사대상 임(P.6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빵, 과자, 떡 등을 접객시설을 갖추어 놓고 구내에서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음식업 임 · 타사업체에서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구입(기성품) 판매분이 자가 제조 부문보다 클 경우는 도·소매업 임 · 알루미늄새시바를 구입하여 단순절단 또는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 농가 및 어가에서 농·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선별, 포장만을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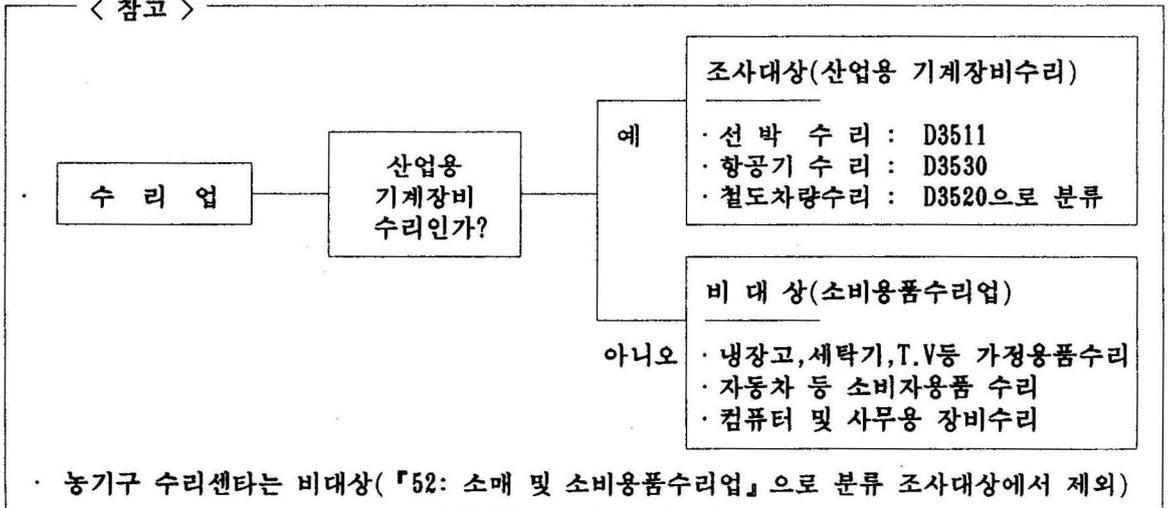
< 참고 >



-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 기타 서비스업과의 관계

제조업(조사대상)	비제조업(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등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은 제조업으로서 해당제품 산업에 분류하여 조사 · 선박 수리는 산업분류 "D3511" · 항공기 수리는 산업분류 "D3530" · 철도차량수리는 산업분류 "D3520" · 공업용, 상업용 및 유사장비의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가 수선에 필요한 부속품을 직접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 임 ·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제조, 혁신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임 · 의류, 직물 등을 직접제조하여 염색하거나, 구입하여 염색하거나 또는 수수료만을 받고 염색하여주는 업체는 모두 제조업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고, 세탁기, TV등 가정용기기 및 가정용품, 자동차 등 소비자용품의 수리를 주로하는 경우는 자동차수리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된다. · 컴퓨터 및 사무용장비의 유지보수를 전문으로하는 경우는 사무기기 유지 및 수리업에 해당된다. · 개개의 가정소비자를 대상으로 세탁, 표백, 염색, 의복을 수선하는 경우는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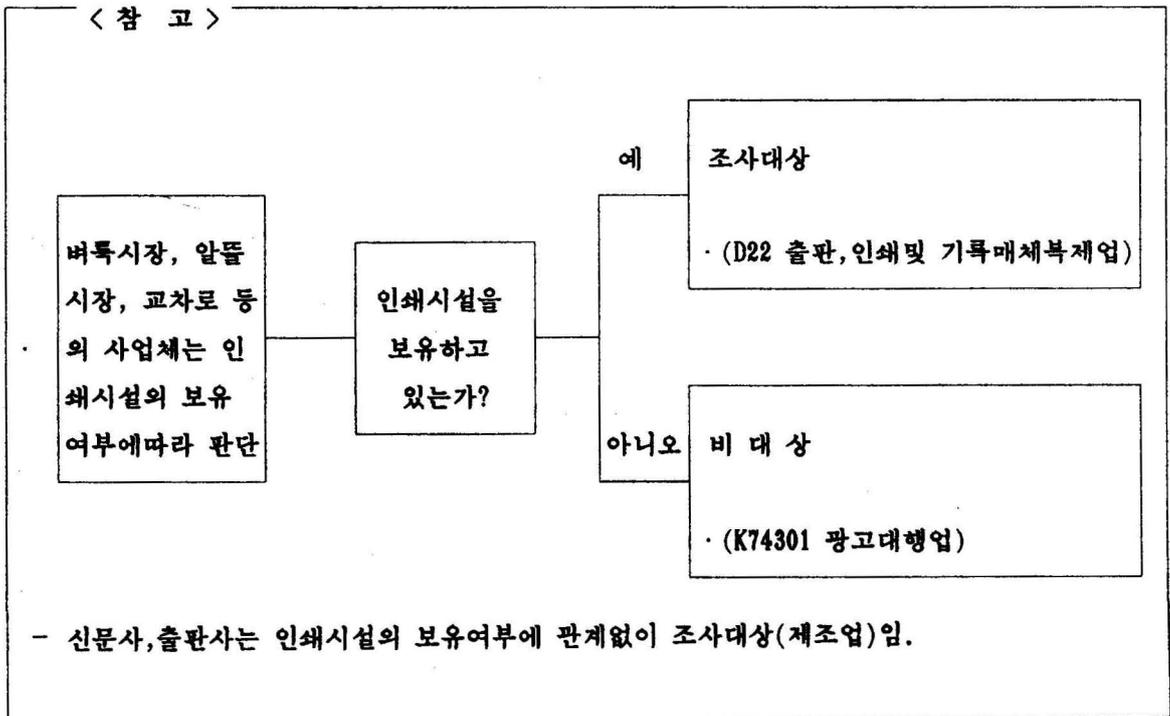
< 참고 >



- 인쇄 및 출판업과의 관계

제조업(조사대상)	비제조업(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사, 출판사는 인쇄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제조업 임 · 학교, 각종협회, 종교단체 등의 산하 소관부서에서 별도로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각종협회, 종교단체 등의 산하 소관부서에서 신문, 협회지, 사보 등을 발간하여 단체 구성원들에게 배부하는 경우는 각급 기관단체의 부수업무로 보아 인쇄·출판업으로 보지 않음

< 참 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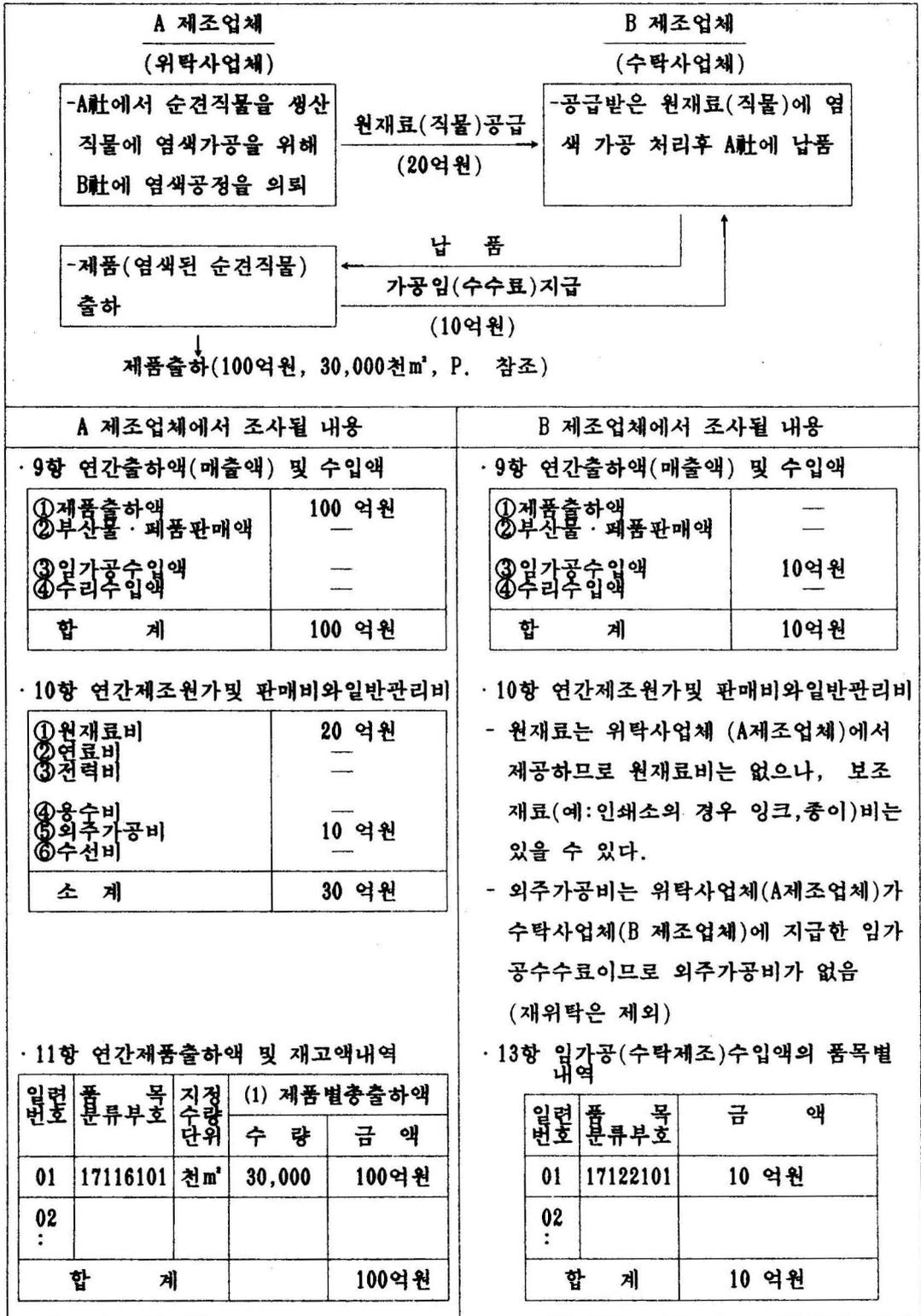
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 콩나물 공장
- 개인을 상대로 표백 및 염색활동을 겸한 사업체(세탁소)
- 接客시설을 갖추고 주로 구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과점(다만,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비중이 높거나,接客시설이 없는 경우는 조사대상 임)
- 알루미늄 세시바 판매점(건재상 등에서의 단순절단 판매 등)
- 자동차, 자전거, TV, 냉장고 등의 소비자용품 수리점

바. 조사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업체

- 휴업중인 계절사업체 : 얼음공장, 정미소, 염전
- 채석 및 모래, 자갈 등의 채취사업체
- 주문 제작위주 제조사업체 : 도장포, 표구점, 철공소
- 방위산업 사업체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체외에는 모두 조사함(군으로부터 수탁여부 불문)
- 위탁사업체(A 제조업체)
 - o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A제조업체가 B제조업체에 일부 제조공정을 의뢰하여 제조케하는 경우
 - o 제조시설이 없는 A제조업체가 B제조업체에 제조 의뢰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조사대상으로 포함.
 - ① 생산할 제품을 A社에서 직접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 ②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B社에 제공하여
 - ③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 수탁사업체(B 제조업체)
 - o A 제조업체로 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 제조하여준 대가로 가공임을 받은 B제조업체

< 참고 > 위탁·수탁사업체의 관계



7. 조사단위

조사단위는 사업체(공장, 작업장등)이다.

8. 조사방법

- 자계식 및 타계식 조사를 병행 (타계식 조사를 원칙으로 함)

- o 결산자료가 있거나 회계장부 기장 능력이 있는 사업체 (조사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체 포함)는 자계식 조사방법
(조사표 배부 및 기입요령 설명→사업체에서 조사표 작성→내용검토및 회수)
- o 기장 능력이 없는 사업체는 타계식 조사방법 (조사요원이 사업체를 방문 하여 직접 관계인을 면접하여 작성)

< 자계식 >

조사표 내용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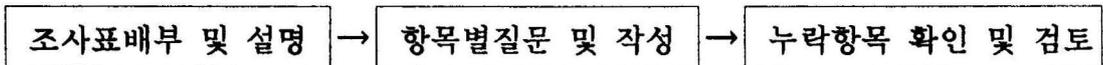
- 특히 다공장사업체인 경우 다른 사업체와의 합산조사가 되지 않도록 조사단위 설명 (종사자수, 출하액, 유형고정자산 등)
- 생산품목을 산업 및 품목분류책자의 내용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여 기재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또한 지정수량단위에 의해 조사되도록 설명
- 기타항목에 대한 설명

조사표를 사업체에서 작성

조사표 검토

- 생산품목의 누락여부 및 지정수량단위에 따라 조사되었는지 검토
- 다공장사업체의 경우 다른 사업체와의 합산 조사여부 검토
- 기타항목의 조사누락 및 연관관계를 검토한 후 조사표 회수

< 타계식 >



9. 조사표 종류

가. 조사표(I) : 종사자 5인(300인)이상 광공업 사업체용 조사표

※ 종사자 300인이상 광공업 사업체용 조사표는 이면에 11항 연간제품출하액(매출액) 및 재고액 내역을 품목별로 정확하게 분리하여 충분히 기입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계하였음

나. 조사표(II) : 광공업 본사용 조사표

10. 조사사항

조사표 I : 종사자 5인(300인)이상 광공업 사업체용 : 17개 항목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2. 본사소속 타공장 유무
3. 본사명 및 소재지
4. 경영조직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6. 부지 및 건물 연면적과 임차료
7. 종사자수
8. 연간급여액
9. 연간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10.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1. 연간제품출하액(매출액) 및 재고액 내역
12. 재고액
13. 연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14. 유형고정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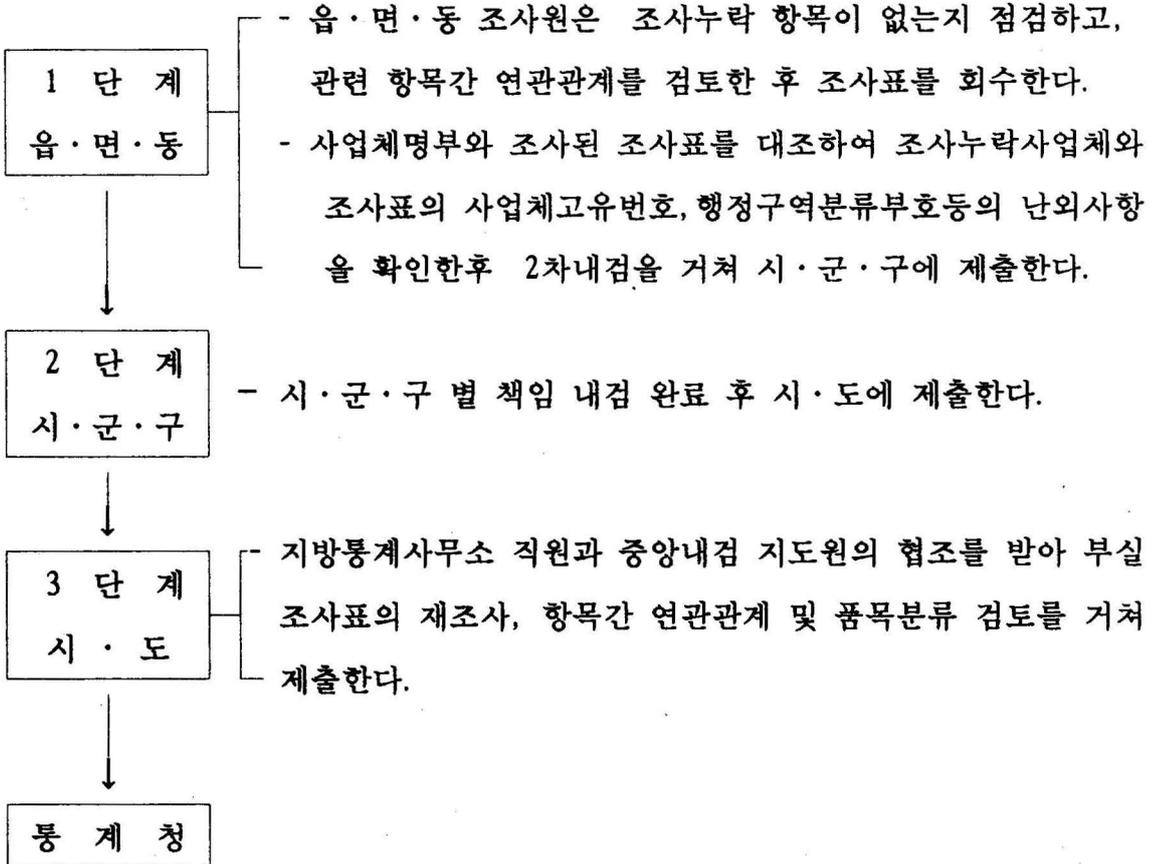
15.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16. 주요사용 원재료명
17. 주요생산공정

조사표 II : 광공업 본사용 : 11개 항목

1.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2. 경영조직
3. 자본금 또는 출자금
4. 종사자수
5. 연간급여액
6. 연간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7.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8. 기술연구개발비
9. 재고액
10. 유형고정자산
11. 본사 및 관할 사업체내역

11. 조사표 회수·내검 및 조사표 제출

조사완료된 조사표는 단계별 내검을 거쳐 제출한다.



12. 조사결과 공표

결과공표(잠정) : 전산입력과 종합분석을 거쳐 12월중 공표

보고서 발간 : 97년 4월중 종사자 5인이상 광공업 사업체의 산업별·지역별·품목별 보고서 발간

Ⅱ. 조사준비 및 실지조사

조사담당자는 조사요령 및 제반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여 조사업무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① 조사대상 사업체는 빠짐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체명부에 없거나, 응답을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허위·부실 조사표를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 ② 조사기간중 업무량을 적절히 배분하여 일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 ③ 사업체의 생산제품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어떠한 품목분류에 해당되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체명부에 있는 품목분류 번호를 그대로 확인절차 없이 옮겨 적거나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 ④ 완료된 조사표는 내용검토를 철저히 하여 착오기입, 항목누락, 관련항목간 계수 불일치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단순한 것일지라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 조사업무의 실시순서



2. 조사준비

가. 조사용품 수령

- (1) 사업체명부 및 표지(사업체명부는 실사용과 통계청 송부용 각 1부)
- (2) 조사표 I (5인이상, 300인이상), 조사표 II 및 표지
- (3) 조사요령서
- (4) 조사협조요청 공문
- (5) 산업 및 품목분류표(조사원용, 종사자 50인이상 사업체용)
- (6) 작성서식(집계표, 추가 및 전출사업체명부, 접수대장, 내용심사총괄표)

나. 교육훈련

- 조사원은 반드시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조사요령에 대한 의문사항은 질의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다. 조사대상 사업체 확인 및 명부의 수정·보완

(1) 조사대상 사업체확인 및 명부의 수정·보완 필요성

- 조사대상 사업체명부란 광공업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사업체의 누락이나 조사중복 등을 방지하고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광공업사업체와 관련한 최근의 자료('95년기준 광공업통계조사 결과, 추가·보완 조사결과 등)를 행정구역별로 정리한 기초자료(조사대상 사업체 목록)이다.
- 그러나 조사대상인 광공업 사업체는 휴업·폐업, 새로운 사업체의 창립(신설), 사업체의 주소(소재지) 이전(전출, 전입) 등이 수시로 발생하

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실시를 위해서는 이 조사를 실시하기 직전에 작성('96. 2. 1 ~ 2. 29)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사업체를 확인·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사업체명부는 조사결과의 정도제고뿐 아니라 차년도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한 명부작성 대상 사업체의 범위

- 사업체기초통계 결과 주산업 및 부산업에 관계없이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으로 조사되었으면 조사대상 사업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광공업 실사용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광공업통계조사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의 관계 〉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사업체(종사자 1인이상)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관련 통계조사중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조사임
 - 광공업통계조사는 광공업사업체(종사자 5인이상)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95년기준 광공업통계조사 조사대상 사업체는 '9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결과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그러나 양 조사는 조사기준일은 동일하나 조사실시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사유(예: 폐업, 사업체 이전, 휴업 등)로 인해 현실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차이가 나는 경우 정확한 사유가 규명되어야 함.
 - 이에따라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는 조사되었으나 광공업통계조사용 사업체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반드시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 광공업통계조사에서는 조사표가 작성되었으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95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 ※ 따라서 폐업, 휴업, 사업체이전 등과 같이 조사불가능 사유가 명백한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통계조사 자료는 동일한 사업체수를 나타내어야 함

(3) 사업체명부 수정, 보완 방법

- '95년기준 광공업통계조사 실사용 명부가 송부되면 각 읍·면·동별로 '95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조사표를 입력한 전산자료에서 주산업(主産業)에 관계없이 종사자가 5인 이상이면서 광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업체의 명부를 출력하여 양 자료의 동일성여부를 철저히 대조하여야 한다. (명부출력요령은 P.25참조)
- 대조작업결과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에서는 광공업사업체로 조사되었으나 실사용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가 있을 경우 동 사업체를 실사용 명부에 추가, 보완하여야 한다.
- 조사원은 조사시작 이전에 보완된 실사용 명부를 기준으로 조사담당 지역내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대상 여부 (광업 또는 제조업 사업체인가?, 종사자가 5인 이상인가?)를 확인하여 실사용 명부를 다시 한번 보완하여야 한다.
- 사업체명부는 조사의 정확성 제고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명부보완 과정이나 조사실시 기간중에 명부에 없는 사업체가 새로이 발견되면 '95년도의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명부에 등재한 후 조사를 하여야 한다. ('96년도에 신설된 사업체는 명부에만 등재하고 조사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 다른 지역으로부터 전입된 사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해당 소재지(읍·면·동 및 시·군·구)에 연락하여 사업체고유번호 등을 확인, 보완하여야 한다. (명부에 있는 사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되었을 경우 해당 읍·면·동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또한, 명부상에 있는 사업체의 행정구역이 잘못되었거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관할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도 해당 읍·면·동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조사가 완료되면 실제로 작성된 조사표와 사업체명부의 대조 작업을 통해 누락이나 잘못된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하여 「통계청 송부용 사업체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체명부 정리 방법은 P.81의 작성예시 참조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한 광공업 사업체명부 출력요령

'95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를 전산입력한 후 광공업의 5인이상 사업체명부를 출력하는 요령임

- 명부출력 과정

- o 제1단계: 광공업 조사대상처 명부화일 『KWANG. UDB』 작성
- o 제2단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의 사업체명부 출력요령에 따라 명부출력

- 명부화일 작성요령 (제 1단계)

※ 작업전 PC의 "C:\WSIMS96>"내에 설치되어 있어야할 화일명 확인

- DBU. EXE
- Fxxxxyy96. UDB ('95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자료가 입력된 화일)
(xxx : 구시군코드 yy : 읍면동코드)

- 컴퓨터 전원을 켜다.
 - C:\> (최초화면)
 - C:\>CD SIMS96 [ENTER] (C:\>에서 "CD SIMS96"을 친후 [ENTER]키를 누름)
 - C:\WSIMS96>DBU [ENTER] (C:\WSIMS96>에서 "DBU"를 친후 [ENTER]키를 누름)
- 위 명령을 실행하면 아래화면이 나타나고 커서는 Files아래에 위치하게 됨

F1	F2	F3	F4	F5	F6	F7	F8
Help	Open	Creat	Save	Browse	Utility	Move	Set

DBU - Copyright (c) 1990-1993 Computer Associates Int'l, All...

Files

Indexes

Fields

- Files 아래에 각 읍·면·동의 '95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자료가 입력된 파일명 『Fxxxxy96.UDB』를 입력하고 [ENTER]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상태가 됨

F1 Help	F2 Open	F3 Creat	F4 Save	F5 Browse	F6 Utility	F7 Move	F8 Set
------------	------------	-------------	------------	--------------	---------------	------------	-----------

Files

Fxxxxy96

Indexes

Fields

ZONE_C JOSA_ID JOSA_TK SAUP_C SAUP_N	
--	--

- 위 화면상태에서 F6(Utility) 키를 누르면 커서가 『Copy』에 위치하고 다시 [ENTER]키를 누르면 우측과 같은 소화면이 나타남

Copy Fxxxxy96.UDB to...	컴*.DBF 컴컴 CODE_SAN.DBF ERRSUM.DBF IMSI.DBF MAST95.DBF NEWSUM.DBF PASS.DBF SANCODE.DBF SUM.DBF ZONE_C.DBF
File	
FOR	
WHILE	
SCOPE ALL	
SDF	DELIMITED
Ok	Cancel

- 위 화면에서 "File"옆에 『KWANG.UDB』를 입력하고 아래방향키(↓)를 이용하여 "FOR"에 커서를 위치시킴

- "FOR" 옆에 『EMP_TO>4. AND. (SN1_B>'10000'. AND. SN1_B<'40000'. OR. SN2_B>'10000'. AND. SN2_B<'40000')』를 입력하고 아래방향키(↓)를 이용하여 "Ok"에 커서를 위치시킵
- 커서가 "Ok"가 있는 위치에서 [ENTER]키를 누르면 "File Copied"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광공업 조사대상처 명부화일인 『KWANG. UDB』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끝나게 되며, 작업종료는 [Esc]키를 누른후 Y 를 누름
- 만들어진 『KWANG. UDB』는 다음 제 2단계에서 명부출력요령에 따라 명부를 출력할 수 있다.

- 명부출력 요령(제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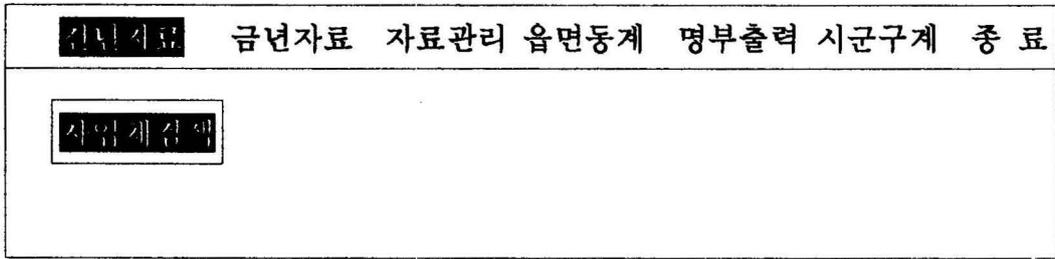
○ 읍·면·동 담당자용 『조사결과의 입력, 내검 및 집계요령서』의 사업체명별 사업체명부(가나다순) 출력요령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명부를 출력한다.

- 컴퓨터 전원을 켜다
- C:₩>
- C:₩>CD SIMS96 [ENTER]
- C:₩SIMS96>SIMS3 [ENTER]

위 명령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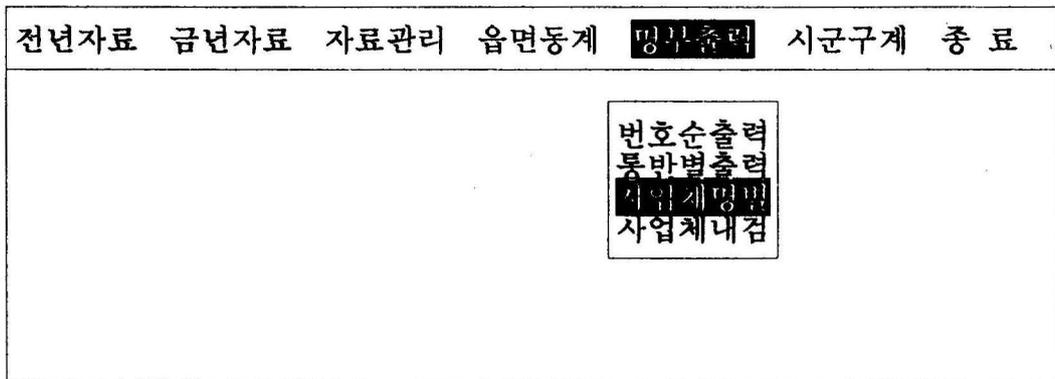
■ 사업체기초통계 관리시스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체기초통계 조사표 입력·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Ver 3.0</p> <p style="text-align: center;">Copyright (c)1996 N. S. O Nat'l Statistical Office</p> </div>	
[읍면동코드] [작성자리름]	[읍면동명] XXXXXXXXXXXXX [암 호] XXXXXXXXXX
ESC 복귀	

□ 앞의 화면에서 암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주메뉴 화면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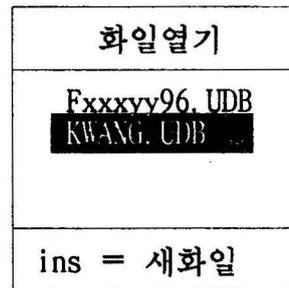


□ 주 메뉴화면에서 우측이동키(→)를 사용하여 커서의 위치를 『명부출력』에 옮겨주고, 다시 아래이동키(↓)를 사용하여 『사업체명별』 위치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상태가 됨

< 그림 1 >



□ 위의 화면에서 [ENTER]키를 두번 누르고 옆과 같은 소화면이 나타나면 커서를 움직여 『KWANG. UDB』를 선택한후 [ENTER]키를 계속 눌러 위의 화면이 다시 나타날때 키를 멈춘다



□ 이때 프린터가 PC와 연결되어 있으면 광공업 조사대상처 사업체명부가 바로 출력됨

□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않은 경우는 별도의 디스켓을 B드라이브에 넣고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사업체명부 화일을 디스켓에 복사함

```
□ B 드라이브에 디스켓을 넣는다
□ C:\SIMS96> COPY SAUPNAME.TXT B: [ENTER]키를 누름
```

□ 복사한 디스켓을 가지고 프린터가 있는 컴퓨터에서 다음 명령을 수행하여 사업체명부를 출력함

```
□ C:\P> PRINT B:SAUPNAME.TXT [ENTER]를 누름
```

□ 명부출력 후 작업을 종료할 때는 <그림1>에서 커서의 위치를 우측방향(→)으로 두번 눌러 『종료』에 두고 [ENTER]키를 두번 누름

- 명부출력 양식(A4 횡으로 인쇄됨)

사업체 기초통계 사업체 명부(사업체 이름순)

PAGE : 1
출력일자 : 96.MM.DD

행정구역명칭 : ○○동 (행정구역번호)

일련 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	소재지	통/반	형 태	구 분	창 설 년월	사업내용	산업 분류	중 사 자 수	매출액 (백만원)
001011	상보전자	송인권	553-7367	799-23	47/6	1	1	1991.2	통신기기제조	32201	41	1000
001010	세모	박상복	565-3535	796-26	45/5	1	1	1979.3	식품제조업	15499	6	100
001008	우방기전	강문보	556-6286	793-5	48/2	1	1	1993.6	자동제어장치	31203	11	200

3. 실지조사

가. 조사협조요청 공문 전달

조사원은 조사대상 사업체를 처음 방문시 협조공문을 반드시 휴대하여 해당 사업체에 접수시킨다. (우편발송 절대금지)

나. 조사표류 배부 및 실지조사

조사대상 사업체로 확인되면 사업체구분에 따라 적정한 조사표를 배부하여야 한다.

<참고> 사업체구분별 작성대상 조사표 종류

사업체 구분	형 태	배부 조사표
① 단독사업체	- 공장이 1개이며, 본사와 공장이 <u>동일한 장소</u> 에 있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본 사 + 공 장</div>	I 표
② 본사, 공장 (서로 별도의 장소에 있는 경우)	- 공장이 1개이며, 본사와 공장이 <u>다른장소</u> 에 있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 10px auto;">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본 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공 장</div> </div>	본사 : II 표 공장 : I 표
④ 본사+공장 (다공장기업의 경우)	- 공장이 2개 이상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 10px auto;">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본 사 + 1공장</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30%;">2공장</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30%;">3공장</div> </div> </div>	본사 : II 표 1공장 : I 표 2공장 : I 표 3공장 : I 표

- 당해 공장에서는 조사표작성이 불가능하고, 타 지역에 있는 본사나 다른 공장에서만 작성이 가능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조사표를 우선적으로 배부한다.
- 조사표 작성시 반드시 각 항목별 유의사항 및 조사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토록 당부한다. 특히 9항의 품목분류부호 및 제품명 기입시, 사업체 명부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명이 잘못되었거나 수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체담당자에게 확인하여 '95년기준 조사용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따라 정확히 구분, 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사지도(시·군·구, 시·도 지도원 임무)

- 광공업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이상의 광공업사업체 뿐만 아니라 광공업본사도 조사함에 따라 시·도, 시·군·구별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조사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 특히 사업체 기초통계를 통해 발굴된 신규, 누락사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체명부 보완작업을 실시하여 조사누락을 방지한다.
- 조사의 조기착수 및 조사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조사와 조사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착오조사 및 부실조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한다.

시 · 군 · 구	시 ·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5인이상 광공업 사업체명부 및 광공업본사용 명부의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명부를 읍면동별로 분할배부하되 읍면동별 사업체수를 사전에 파악하여 추후 조사표 제출내역과 대조확인 ○ 행정구역 개편지역(분동, 분구, 통합동)은 사업체명부를 개편된 행정구역 관할에 따라 정확히 조정하여 배부 - 조사표류 배부 및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량의 조사표를 읍면동 조사원에게 배부하여 조사토록 조치 ○ 조사완료후 관계자료와 함께 읍면동별로 접수하여 합철 - 교육·순회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에서 실시하는 시군구 담당자 교육을 받고 이에따라 조사원을 소집하여 직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계획수립 및 수행사항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자체실시 계획수립 및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점검, 지도감독 ○ 조사표를 산하 시군구에 배부하되 관내 시군구간에 행정구역개편이 있을 경우 사전에 종사자 5인이상 광공업사업체 명부를 조정하여 배부함 ○ 조사완료된 각종 자료를 시군구별로 접수 분류하여 통계청에 제출 ○ 시군구에 대한 교육실시와 관내조사원 교육시 순회점검 (조사원의 훈련실시 여부 및 참석상황 과정, 교육의 충실도 등을 확인)

시 · 군 · 구	시 · 도
<p>- 실사 및 순회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사기간중 각 읍면동을 순회하여 조사의 오류를 시정하고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 <p>- 조사표 내검 및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에서 작성된 집계표를 기초로 시군구 집계표, 접수대장 및 내용심사총괄표를 작성하며, 조사표·사업체명부 등 각종서식을 읍면동별로 편철하여 시도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를 순회하며 조사의 오류 등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고 조사의 진행 정도를 점검하여 기일내 조사가 완료되도록 독려 ○ 집계표, 접수대장 등 시도관련자료를 작성하여 각종 조사표류와 함께 중앙에 제출 ○ 내용심사총괄표 작성시 시군구 및 시도별 분석을 철저히하여 관내 변동사항이 정확히 반영 되었는지 점검

Ⅲ.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표 I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용)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

- ◇ 이 조사는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계기간이 이와 다르더라도 가급적 이에 맞추어 작성한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근 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거 작성한다
- ◇ 이 조사는 개개 사업체(공장)별 조사이므로, 본사나 동일기업내 타공장이 따로 있을 경우, 각각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여러 사업체분이 동일 회계에 의해 통합 작성되고 있어 구분이 곤란한 경우라도 공장별 출하액, 유형고정자산, 종사자수 등 해당업체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산정한 후 반드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조사대상 사업체는 빠짐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체명부에 없다거나, 응답을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임의로 조사에서 제외시키거나, 허위·부실 조사표를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 ◇ 사업체의 생산제품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어떠한 품목분류에 해당되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체명부에 있는 품목 분류부호를 그대로 확인절차 없이 옮겨 적거나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 ◇ 완료된 조사표는 내용검토를 철저히 하여 착오기입, 항목누락, 관련항목간 계수 불일치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조사표 상의 부호는 다음 경우를 나타낸다.
 - ★ : 읍·면·동에서 기입
 - ★★ : 통계청에서 기입
 - *** : 기입하지 않는 부분

난 외 사항

★ 행정구역분류부호	★ 전산번호	★ 사업체고유번호	★ 산업분류
- -		-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 행정구역분류부호가 '95. 12. 31 현재 기준으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사업체고유번호가 사업체명부상 번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누락사업체의 경우 시·도에서 새로 부여한 사업체고유번호의 중복 또는 착오 기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전입 사업체는 기존의 사업체고유번호를 그대로 이기했는가 확인해야 한다.
- 전산번호가 사업체명부상 전산번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행정구역분류부호

- '95. 12. 31 현재의 행정구역분류부호를 기입한다.

전 산 번 호

- 조사표 작성이 완료된후 사업체명부(통계청송부용)에 새로이 부여한 전산번호를 찾아서 기입한다.
- 읍·면·동별로 조사표작성이 완료된 후, 조사표 작성이 안된 사업체(폐업, 휴업, 전출 등)를 제외하고 신규발굴 사업체(명부누락·전입)는 명부에 추가 등재하여 전산번호를 부여한후 기입하되 전산번호의 중복, 누락 및 결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맨 마지막 전산번호=조사된 사업체수=조사표 매수)

※ 전산번호와 명부번호는 일치하지 않아도 됨

사업체 고유번호

- 읍·면·동, 시·군·구에서 기입할때

- 조사표에는 광공업사업체명부상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이기한다. 단, 사업체 명부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체의 고유번호는 관할 시·군·구를 경유, 시·도에 보고하여 시·도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를 통보 받아 기입한다.
- 사업체명부상의 사업체중 읍·면·동으로 부터 보고 받은 동일 시·군·구 내의 읍·면·동간의 전·출입 사업체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시·군·구 보관용명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체에 대한 고유번호를 찾아 읍·면·동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에서 고유번호를 신규부여할때

- 통계청에서는 시·도에서 부여할 수 있는 사업체고유번호의 범위를 실사전에 별도 통보할 예정임
- 시·도에서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부터 추가발굴 (명부누락)된 사업체의 고유번호부여 요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규번호를 부여하여 요청한 산하기관에 조속히 회신하여야 함

< 사업체고유번호 신규부여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 기존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적이 있는 사업체는 아닌가?
 - 기존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 중복보고된 사업체는 아닌가?
 - 확인후 1개 사업체만 고유번호를 유지시킴
- 타 시·도로부터 전입한 사업체는 아닌가?
 - 타 시·도에서 사용하던 사업체고유번호를 확인후 재사용하여야 함

산업분류(조사완료후에 기입)

- 사업체명부상의 산업분류를 그대로 이기해서는 안되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분류 결정방법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여 기재한다.
- 조사표 11항 「연간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13항 「임가공(수탁 제조)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중 산업세세분류(품목 분류부호 8자리중 앞의 5자리까지의 숫자)별 출하액이 가장 많은 것을 택하여 5자리 부호로 기입한다.

※ 산업분류 결정방법

- 해당사업체의 생산품목이 1개인 경우
 -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생산품목분류부호의 앞 5자리까지의 숫자
- 해당사업체의 생산품목이 2개이상인 경우
 - 출하액이 가장 큰 생산품목의 품목분류부호 앞 5자리까지의 숫자를 기입.
단. 이때 품목은 서로 다르더라도 앞 5자리(산업세세분류)까지의 부호가 같은 경우는 이를 합산하여 타 생산품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11항 연간제품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일련번호	품목분류부호	제 품 명	제품별 총출하액	
			수 량	금 액
01	19201 : 105	아 동 화	○○○○	50 억원
02	19201 : 106	가 족 장 화	○○○○	30 억원
03	19204 : 101	고 무 신	○○○○	40 억원
합 계			○○○○	120 억원

13항 연간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일련번호	품목분류부호	제 품 명	금 액
01	19202 : 101	직물 운동화	20 억원
02	19204 : 101	고 무 신	60 억원
합 계			80 억원

※ 11항, 13항 내의 일련번호별 품목분류부호중 산업세세분류(앞 5자리)가 동일한 품목의 금액과 산업세세분류(앞 5자리)를 나열한다. 그 중 가장 금액이 큰 산업세세분류를 광공산업(주)의 산업분류로 결정

- 산업분류 19201: 80억원(11항의 일련번호 01+02)
- 산업분류 19204: 100억원(11항의 일련번호 03+ 13항의 02)
- 산업분류 19202: 20억원(13항의 일련번호 01)

따라서 광공산업(주)의 산업분류는 19204로 분류되어야 함

항목별 작성요령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전화() -	★ 공 단 명	★ 공 단 번 호
① 사업체(공장)명 :		
② 대표자 :		
③ 소재지 :	시 ·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번지
④ 창설년월 : 19 년 월	⑤ 결산기 : , 월	

①사업체명 : 사업체의 정식 명칭을 기입하고 무등록업체일 경우 실제 사용하는 명칭을, 명칭이 없을 경우는 대표자명을 기입한다.

전화 :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사업체의 대표적인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②대 표 자 : 대표자명을 기입하되 대표자가 2인이상일 경우 1명만 기입한다.

③소 재 지 : 법정동명과 번지 호수까지 기입하되 아파트식 공장, 복층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층까지를 정확히 기입한다.

④창설년월 :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가 실제 가동된 년월을 기입한다. (단, 『개인』에서 『법인』으로 경영조직이 변경된 경우는 법적 설립년월을 기입한다.)

⑤결 산 기 : 결산 마감월을 기입한다. (1년에 결산을 2회이상 하는 경우는 해당 월을 모두 기입)

※ 공단명 및 공단부호 :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부록의 “공단명 및 공단부호”를 참고하여 기입하며, 본책자에 누락된 공단이 있을 경우는 공단명만 기입한다. 여기서 공단이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개인 공단을 포함한 기타 공단을 말한다.

2. 본사소속 타공장유·무(해당되는 번호에 ○표)

- ① 공장이 1개이며, 본사와 공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음
(생산시설이 없는 위탁사업체 포함)
- ② 공장이 1개이며, 본사와 공장이 다른 장소에 있음
- ③ 공장이 2개 이상임(상기 ①, ②이외)

- ① 은 다른 장소에 동일기업소속 공장이나 본사가 없는 단독사업체를 의미하며 생산시설이 없는 위탁제조업체는 『①공장이 1개이며 본사와 공장이 동일장소에 있음』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①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3항 본사명 및 소재지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 공장이 2개이상인 경우중 공장1개와 본사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도 『③ 공장이 2개 이상임』으로 분류한다.

3. 본사명 및 소재지		전화()		-	
본사명:		소속모기업(그룹)명			
소재지: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리	번지

- 본사란 실제로 기획, 회계, 재무, 구매, 광고, 법무 등 총괄적인 관리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대부분의 사업체는 본사와 사업체(공장)가 동일한 장소에 있으나 사업체에 따라서는 업무상 별도의 장소에 본사를 두는 경우도 있다.
- 3항 본사소속타공장 유·무에서 『②공장이 1개이며, 본사와 공장이 다른장소에 있음. 또는 ③공장이 2개이상임』에 해당되는 사업체의 경우 본사소재지를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까지 상세히 기입한다.
- 『소속모기업(그룹)』이란 법적으로 독립된 2개이상의 기업들이 자본, 혈연관계 등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지도적(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4. 경영조직

- ① 회사(주식·유한·합자·합명)법인
- ② 회사이외의 법인
- ③ 개 인

- 해당란에 "○"표

①회사법인 : 상법상의 회사법인(주식·유한·합자·합명)을 말한다.

②회사이외의 법인 : 법인격이 있는 조합과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함, 따라서 회사법인 및 개인사업체가 아닌 모든 법인은 회사이외의 법인으로 분류한다.

③개 인 : 개인사업체(법인격이 없는 익명의 조합은 개인으로 분류)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조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원

- 회사법인에 한하여 최초의 납입자본금이 아닌, 95. 12. 31현재 납입 완료한 자본금(출자금) 총액을 기입한다.

6. 부지 및 건물연면적

- 제조업체만 조사하며, 광업은 제외
- 임대한 부분 및 비업무용은 제외 (1평≒3.3m²)
-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

	(1) 자기소유	(2) 임차사용
①부 지	m ²	m ²
②건 물 연 면 적	m ²	m ²
③임 차 보 증 금	* * *	백만원
④임 차 료(연간)	* * *	백만원

- 제조업 사업체에 대해서만 조사하며, 광업은 제외한다.

- 지하에서 제조활동을 하는 사업체는 부지를 조사하지 않고, 조사표 비고란에 『지하』라고 기재한다.
- 사업목적으로 사업체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지 및 건물의 소유형태와 면적을 기입한다(소유가 아닌 사용개념이며, 임대 및 비업무용 제외)
- 임차료는 부지 및 건물의 임차분에 한하여 조사하며 임차보증금은 전세금, 월세 보증금 등을 말한다. 임차료(연간)는 월세, 삭월세 등으로 1년간 지불한 총액을 기입한다.
- 부지 및 건물연면적의 (1)자기소유란에 면적이 기입된 경우 : 14항 유형고정자산 중 (5)연말잔액 항목의 ①토지 또는 ②건물 및 구축물란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 참 고 > 동일한 건물내에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는 경우

- 부지 300㎡, 건물밀면적 200㎡인 3층 건물을 A 제조업체는 1층 전체, B 제조업체는 2층의 1/2을 사용한다고 할때 A, B 제조업체의 부지, 건물연면적은 ?
- 건물전체연면적 : $200\text{m}^2 \times 3\text{층} = 600\text{m}^2$
- 부 지 : 300㎡

		A 사업체		B 사업체	
3층					
2층	B 사업체	부 지	$300\text{m}^2 \times \frac{1}{3} = 100\text{m}^2$		$300\text{m}^2 \times \frac{1}{6} = 50\text{m}^2$
1층	A사업체	건 물 연면적	$600\text{m}^2 \times \frac{1}{3} = 200\text{m}^2$		$600\text{m}^2 \times \frac{1}{6} = 100\text{m}^2$

[광 공 빌 당]

7. 종사자수

- 임시 및 일고, 사장, 임원 등 포함
- 일고 종업원은 연인원으로 계상 하여서는 안됨

		(1) 12월말 현재 종사자수			(2) 조업기간중 월평균
		계	남	여	종 사 자 수
①	자 영 업 주				
②	무 급 가 족 종 사 자				
피고용자	③ 생 산 직				
	④ 사무직 및 기타				
합 계					
⑤ 연 간 조 업 월 수 ()개월					

- 종사자수에는 적법 또는 불법 외국인 취업자,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된 일용 및 상용종사자(파견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기입한다. (휴업기간을 제외한다.)

(1) 12월말 현재 종사자수

- '95. 12. 31일 현재의 실제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12월중에 조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휴업, 계절업종 등)에는 종사자수를 기입하지 않고 「△」 표시만 하고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수는 반드시 기입한다.

(2) 조업기간중 월평균종사자수

- 실제 조업을 한 각 월의 평균 종사자수의 누계를 조업월수로 나눈 월평균 종사자수를 말한다. (특히 일일고용종사자는 연인원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연인원일 경우는 그 달의 조업일수로 나누어 월평균 종사자수를 구한다)

< 참고 >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종사자의 조사는 ?

o 월중 조업일수 : 26일 $\left[\begin{array}{l} 10\text{일간 } 20\text{명씩} \\ 7\text{일간 } 15\text{명씩} \\ 9\text{일간 } 30\text{명씩} \end{array} \right]$ 근무하였다면,

o $(10\text{일} \times 20\text{명}) + (7\text{일} \times 15\text{명}) + (9\text{일} \times 30\text{명}) = 575\text{명} \dots \dots$ 월중연근무인원수

$$\frac{\text{월중연근무인원수}}{\text{조업일수}} = \frac{575\text{명}}{26\text{일}} = \boxed{22\text{명}} \dots \dots \text{해당월의 종사자수}$$

- 1년간 5개월만 조업한 경우의 월평균종사자수는?

o 1개월중 1주일이상 조업했을 경우 조업월수에 포함조사함

o

조업월	3월	4월	5월	8월	9월	계
종사자수(명)	35	50	60	60	40	245

$$(35 + 50 + 60 + 60 + 40) \div 5\text{개월} = \boxed{49\text{명}} \dots \dots \text{월평균종사자수}$$

※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에서 파악한 월평균종사자수는 상기 기준으로 상세히 파악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광공업통계조사 종사자수 조사요령에 따라 반드시 재확인 하여야 한다.

① 자영업주

o 개인사업체의 사업주(동업자 포함)를 기입

② 무급가족 종사자

o 개인사업체 사업주의 가족(동거인 포함)으로 정규작업(경영)시간의 1/3이상 사무 및 생산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o 5항의 경영조직이 회사법인이나 조합 및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없으며,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자영업주가 반드시 1인이상 있어야 한다.

- 피고용자

③ 생 산 직 {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생산공정의 특정단계를 기록, 감독하는 기록원과 감독원
 제품, 원재료등 기타물품을 운송하는 트럭운전사

④ 사무직 및 기타 - 생산종업원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한다. 즉,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무, 서기 업무종사자와 이들의 보조원인 사환, 수위, 승용차운전사, 전화교환원, 간호원 등을 말한다.

※ 법인체에서 보수를 받는 사장, 중역 등 임원은 사무직 및 기타에 포함한다.

⑤ 연간조업월수

- o '95. 1. 1~12. 31일 기간중 실제 조업한 개월수를 기입한다.
- o 최소한 월간 1주일이상 조업했을 경우에만 조업월수에 포함한다.

8. 연간급여액					
o 상여금, 제수당 포함					
o 퇴직금, 복리후생비 제외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	*	*	*	*
*	*	*	*	*	*

①자 영 업 주		
②무 급 가 족 종 사 자		
피고용자	③생 산 직	
	④사무직 및 기타	
합 계		

- 연간급여액은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으로 기입하여야 하며 시간제 및 일일고용자에 대한 급여도 포함됨. 따라서 연간급여액의 합계는 10항 ⑦급여총액과 일치되어야 한다.

※ [각종세금, 기여금,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 상여금 등 각종 수당 포함

- o '95년 이전의 체불급여를 '95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한다.
- o '95년중에 지불해야할 급여액을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한다.
- o 현물로 지급한 경우
 - [자가생산품일때 → 지급시의 공장도 가격을 기입한다.
 - [구입상품일때 → 구입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③ 생산직 급여액

- o 생산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액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노무비” 계정과목중 기본급 및 제수당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④ 사무 및 기타 급여액

- o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액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상의 임원 급여, 급료와 임금 및 제수당 합계액을 기입한다.

< 참고 >

- 연간급여액 조사가 타당한지 확인 방법은 ?
- o '95년 노동부 최저임금은 1시간당 1,275원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평균 근로 시간은 226시간(1일 8시간기준)이므로, 1개월간의 최저임금은 1,275원 × 226시간 = 288,150원이다.
- o 그러므로 1인당 월평균급여액이 288,150원 ≤ 1인당월평균급여액 ≤ 4,000,000원 범위 밖에 있는 경우는 7항 종사자수 또는 8항 연간급여액을 재확인 한다.
(1인당 월평균 급여액 = 연간급여액 합계 ÷ 월평균 종사자수 ÷ 조업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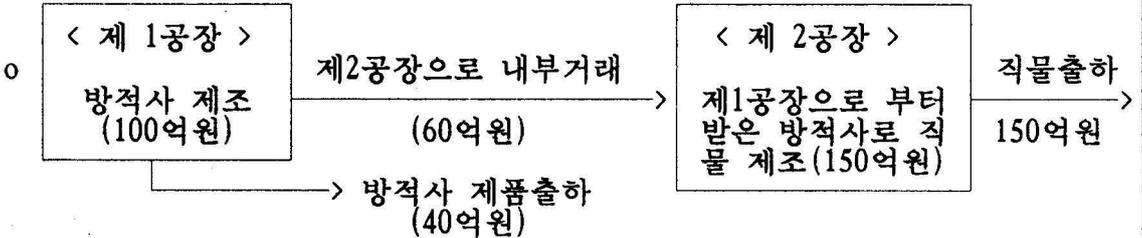
9.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o 제품(자사생산품 또는 위탁생산품) 출하액에는 내국간접세를 제외함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제품출하액									
②부산물·폐품판매액									
③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④수리수입액									
합 계(①+...+④)									
⑤구입상품매출액									
⑥구입상품매출원가									
⑦임대수입액									

①제품출하액

- 당해 사업체에서 직접 제조 생산하였거나, 원재료를 제공하고 위탁생산하여 납품받은 모든 제품중에서 '95년 1년간 출하(내수+수출)한 금액을 말한다.
-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적송품, 할부, 예약, 사용판매등의 경우 사업체에서 제품이 출고되었으면 출하로 조사한다.
- 동일기업내 내부거래분도 제품출하액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외화로 판매한 것은 수출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제품출하액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 내국간접세 및 교육세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제품출하액은 11항(1)제품별 출하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 참고 > 동일기업내 내부 거래분에 대한 조사

- 광공방직(주) 제1공장에서 제조한 방적사중 일부는 직접 출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으로 내부거래가된 경우의 조사는 ?



제 1공장

· 9항 연간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①제품출하액	100 억원
②부산물·폐품판매액	—
③임가공수입액	—
④수리수입액	—
합 계	100 억원

- 제2공장으로 내부거래된 방적사도 9항 제품출하액에 포함하여 조사

- 9항의 제품출하액에 대한 품목내역을 11항에 기재한다.

제 2공장

· 9항 연간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①제품출하액	150 억원
②부산물·폐품판매액	—
③임가공수입액	—
④수리수입액	—
합 계	150 억원

· 10항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①원재료비	60 억원
②연료비	—
⋮	—
⑥수선비	—
소 계	60 억원

- 제1공장에서부터 공급받은 방적사는 10항 ①원재료비로 조사한다.

- 9항의 제품출하액에 대한 품목내역을 11항에 기재한다.

②부산물·폐품판매액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작업잔설(부산물), 폐품 등을 판매한 금액을 기입한다.
- 부산물이라도 본조사에서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①제품출하액으로 조사한다.

< 참고 >

- 도정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은 겨(품목분류 D15311109), 소맥피(품목분류 D15312200)등과 유지제조과정에서 얻은 대두박(품목분류 D15142121) 등의 판매는 ①제품출하액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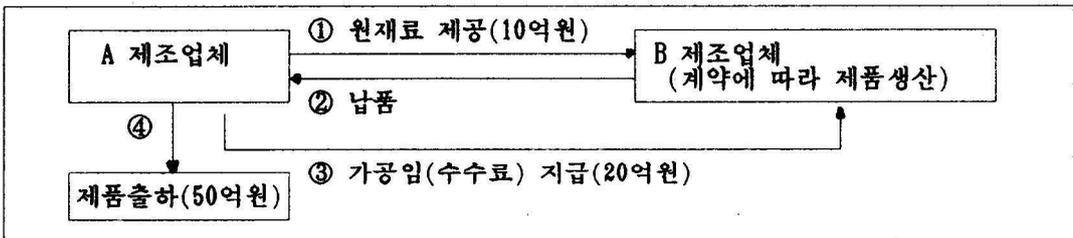
③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

- 원재료(또는 중간제품)나 원재료비를 다른 제조업 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조 가공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입액을 기입한다.

※ 제조업체가 아닌 타산업(예: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사업체로 부터 위탁받은 경우는 ① 제품출하액으로 조사한다.

- 임가공수입액은 13항 임가공수입액의 품목별내역 합계와 같아야 함

- A 사업체(위탁사업체)가 제조업체인 경우



< 작성예 >

A 사업체 (위탁사업체)		B 사업체 (수탁사업체)	
· 9항 연간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 9항 연간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①제품출하액	50 억원	①제품출하액	—
②부산물·폐품판매액	—	②부산물·폐품판매액	—
③임가공수입액	—	③임가공수입액	20억원
④수리수입액	—	④수리수입액	—
합 계	50 억원	합 계	20억원

A 사업체 (위탁사업체)		B 사업체 (수탁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항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table border="1"> <tr> <td>① 원재료비</td> <td>10 억원</td> </tr> <tr> <td>② 연료비</td> <td>—</td> </tr> <tr> <td>③ 전력비</td> <td>—</td> </tr> <tr> <td>④ 용수비</td> <td>—</td> </tr> <tr> <td>⑤ 외주가공비</td> <td>20 억원</td> </tr> <tr> <td>⑥ 수선비</td> <td>—</td> </tr> <tr> <td>소 계</td> <td>30 억원</td> </tr> </table>		① 원재료비	10 억원	② 연료비	—	③ 전력비	—	④ 용수비	—	⑤ 외주가공비	20 억원	⑥ 수선비	—	소 계	30 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항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외주가공비는 위탁사업체(A제조업체)가 수탁사업체(B 제조업체)에 지급한 입가공수수료이므로 외주가공비가 없음 - 13항 「연간입가공(수탁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에 품목내역기재 및 위탁사업체(A사업체)에 대한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① 원재료비	10 억원																
② 연료비	—																
③ 전력비	—																
④ 용수비	—																
⑤ 외주가공비	20 억원																
⑥ 수선비	—																
소 계	30 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항 「연간제품출하액(매출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에 품목내역 기재 																	

A 사업체(위탁사업체)가 타산업(예: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 o A사업체는 타산업을 영위하므로 조사대상에 제외됨.
- o B사업체만 조사한다. (제품출하로 조사)

B 사업체 작성 내용 (A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9항 연간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table border="1"> <tr> <td>① 제품출하액</td> <td>50 억원</td> </tr> <tr> <td>② 부산물·폐품판매액</td> <td>—</td> </tr> <tr> <td>③ 입가공수입액</td> <td>—</td> </tr> <tr> <td>④ 수리수입액</td> <td>—</td> </tr> <tr> <td>합 계</td> <td>50 억원</td> </tr> </table>		① 제품출하액	50 억원	② 부산물·폐품판매액	—	③ 입가공수입액	—	④ 수리수입액	—	합 계	50 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항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table border="1"> <tr> <td>① 원재료비</td> <td>10 억원</td> </tr> <tr> <td>② 연료비</td> <td>—</td> </tr> <tr> <td>③ 전력비</td> <td>—</td> </tr> <tr> <td>④ 용수비</td> <td>—</td> </tr> <tr> <td>⑤ 외주가공비</td> <td>—</td> </tr> <tr> <td>⑥ 수선비</td> <td>—</td> </tr> <tr> <td>소 계</td> <td>10 억원</td> </tr> </table>		① 원재료비	10 억원	② 연료비	—	③ 전력비	—	④ 용수비	—	⑤ 외주가공비	—	⑥ 수선비	—	소 계	10 억원
① 제품출하액	50 억원																										
② 부산물·폐품판매액	—																										
③ 입가공수입액	—																										
④ 수리수입액	—																										
합 계	50 억원																										
① 원재료비	10 억원																										
② 연료비	—																										
③ 전력비	—																										
④ 용수비	—																										
⑤ 외주가공비	—																										
⑥ 수선비	—																										
소 계	10 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A사업체로부터 가공임(수수료) 20억원을 지급 받았으나, A 사업체가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B사업체의 제품 출하로 간주하여 9항 제품출하액으로 조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A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재료를 시가로 환산 ①원재료비를 기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항 「연간제품출하액(매출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에 품목내역을 기재한다. 																											

④수리수입액

- 타인 소유의 산업용기계, 장치를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입액을 기입함.
-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운수장비등의 수리수입액은 ①제품출하액으로 조사하고 11항 제품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에 조사

⑤구입상품 매출액

- 외국에서 수입한 것과 타사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또는 단순포장하여 판매한 상품매출액 총액을 기입한다.
- o 손익계산서상의 「상품매출액」을 기입한다.
- 사업체가 직접 제조가공한 제품은 제품출하액에 기입한다.

< 참고 >

- 제품: · 제조업체에서 직접 제조한 것 (① 제품출하액으로 조사)
· A 사업체에서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한 것(① 제품출하액으로 조사)
- 상품: · 외국에서 수입하여 그대로 또는 단순포장하여 판매되는 것
· 타사업체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그대로 또는 단순 포장하여 판매되는 것

⑥구입상품 매출원가

- 연간 판매된 구입상품의 원가를 기입한다.
- o 판매가 안된 구입상품재고는 제외함

⑦임대 수입액

- 영업외 수입으로서 사업체가 소유한 토지, 건물등의 유형고정자산을 임대하여 주고 받은 수입액을 기입한다.

10.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같은 비목을 합산하여 기입
- 연간급여액 합계와 급여총액은 일치되어야 함
- 열거되지 않은 경비는 기타(영업외 비용은 제외)에 합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원	재 료 비							
②연	료 비							
③전	력 비							
④용	수 비							
⑤외	주 가 공 비(위 탁 생산비)							
⑥수	선 비(수 리 유 지 비)							
	소 계(①+...+⑥)							
⑦급	여 총 액(⑧, ⑨ 제외)							
⑧퇴	직 금							
⑨복	리 후 생 비							
⑩임	차 료							
⑪감	가 상 각 비							
⑫세	금공과금(내국소비세액제외)							
⑬대	손 상 각 비							
⑭기	타 (광고선전비·운반비·보험료·접대비 등)							
합	계(①+...+⑭)							

①원재료비

-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주요재료, 보조재료, 부속품등의 사용 금액을 기입한다.
-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료(부품 또는 반제품)는 시가로 평가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 타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취득한 재료는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외주가공을 위해 타 사업체에 지급한 원재료비 포함
- 광업사업체(모래, 자갈, 석회석채취, 염전 등)는 원재료비가 없을 수 있다.
- 관공서에 납부하는 채취료는 ④기타에 기입한다.

②연료비

- '95년 1년간에 가열료(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 등으로 사용한 석탄류, 유류 등 모든 연료비 금액을 기입한다.

③전력비

- '95년 1년간 구입 사용한 전력요금을 기입한다.

④용수비

- '95년 1년간 생산에 사용된 것은 물론 사무실용, 종사자의 음료용 등을 포함한 모든 용수의 요금을 기입한다.

⑤외주가공비

- 제품생산을 위하여 타 사업체(수탁사업체)와 가사노동자에게 외주작업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가공임)을 기입한다.

⑥수선비

- 건물 또는 기계장치의 현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수선한 비용으로 수익적 지출을 기입하며 기능의 향상으로 자산 증가가 이루어진 자본적 지출은 유형고정자산 취득액중 해당 항목에 기입한다.
-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수선비」항목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상의 「수선비」를 합하여 기입한다.

⑦급여총액

- '95년 1년간 지급한 총인건비(제조원가 명세서상 「기본급」, 「제수당」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상의 「임원급여」, 「급료와 임금」, 「제수당」)를 기입한다.

⑨복리후생비

- 종사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을 기입한다. 구내식당 운영보조비, 치료보조비, 장학금, 경조비, 체육행사비, 치료비, 복리후생시설, 직원 신체검사비, 피복비 등이 포함됨

⑩임차료

-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등을 임차한 경우에 매월 또는 연간 지급되는 임차료를 기입한다. (전세금은 제외)

⑪감가상각비

- 유형고정자산(토지와 건설가계정 제외)인 건물, 기계장치, 공구·기구·비품, 차량 및 운반구 등에 대한 '95년 당해년도분 감가상각비를 기입한다.
-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연간감가상각액을 기입하며 감가상각 총당금 누계액을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⑫세금공과금

- 세금이란 영업과 관계되는 조세 즉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의 세부담액을 말하고, 공과금이란 상공회의소 부과금, 조합비, 협회비 등과 같이 영업과 관계되는 공공적 지출을 말하며, 이 모두를 합하여 기입한다.

⑬대손상각비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추산액 또는 정상적인 대손상각액을 말한다.

⑭기타

- ①항재료비~⑬항 대손상각비이외에 달리분류되지 않은 경비의 합계액을 기입
- 기타의 주요경비로는 광고선전비, 운반 및 보관비, 접대비, 여비, 교통·통신비, 보험료 등이 있음
- 본 항목에는 영업외 비용 및 특별손실은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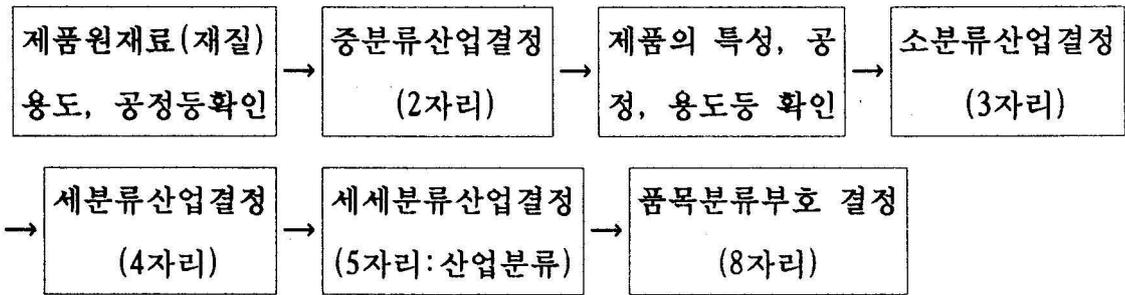
11. 연간제품출하액(매출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일련 번호	품 목 분 류 부 호 (산업 및 품목분류표참조)							제 품 명	★★	수량 단위
01										
02										
03										

- 9항 ①제품출하액에 기입된 총금액을 품목별로 세분 기입함
- 기입할 란이 부족한 경우 조사표 뒷면 및 별지에 이어서 작성한다.
- 동일기업내 내부거래분도 제품출하액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품목분류부호

- 사업체 명부상의 생산품목과 품목분류부호는 그대로 이기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여 분류한다. (산업분류부호, 품목부호, 단위 등 보완)
- 품목명칭만을 보고 그 품목분류부호를 찾아 기입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원재료명과 생산공정을 참고하여 산업분류를 결정한 다음 품목분류를 결정한다.
- 품목명이 유사하더라도 산업및 품목분류가 현저히 다른 것이 많은 만큼, 품목분류표에서 품목을 찾은 다음 산업세분류 및 세세분류의 업종명칭과 간략한 해설을 찾아보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품목분류부호 분류요령]



< 참고 >

(예 1) 자동차부품(무조건 「34300」으로 분류하면 안됨)

○ 자동차 전용부품만 「34300」으로 분류 크랭크샤프트, 브레이크라이닝, 휠, 쇼크업소버, 범퍼, 변속기 등 「산업 및 품목분류」 책자에 기재된 품목만 「34300」으로 분류

○ 기타자동차 부품(원재료에 의한 구분)

- 플라스틱인 경우..... 「25232104」 강화플라스틱 자동차 구성품 및 부품
「25291104」 플라스틱(일반성형) 자동차구성품 및 부품
- 금속(압형제품)인 경우. 「28913402」 금속압형 자동차부품
- 자동차용 내장가구..... 「36104104」 차량용 내장가구
- 유리가공품..... 「26102」에 분류(특히 백미러는 「26102111」)
- 섬유제품..... 「17212107」 자동차용카바(시트카바, 쿠션카바)
「17219105」 안전벨트
- 전기장치..... 「31904」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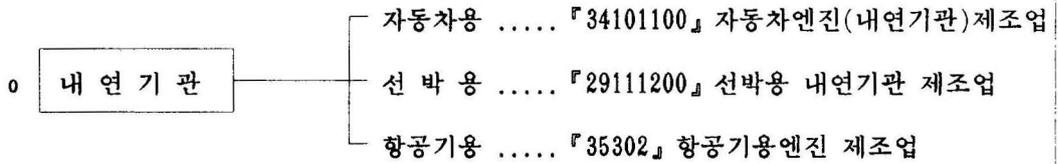
(예 2) 철조망, 철망, 와이어로프의 분류

○ 철강선을 자체제조 재투입 철강선을 자체제조 「27123」 철강선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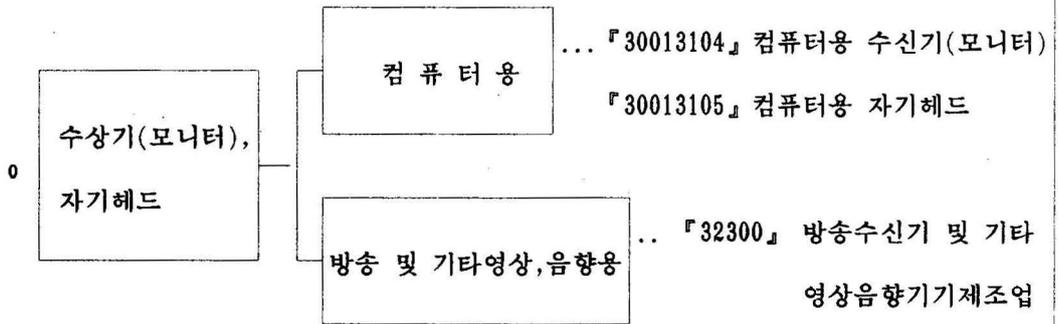
○ 철강선을 구입 철 망 생 산 「28995」 철선제품 제조업

< 참고 >

(예 3) 내연기관제조업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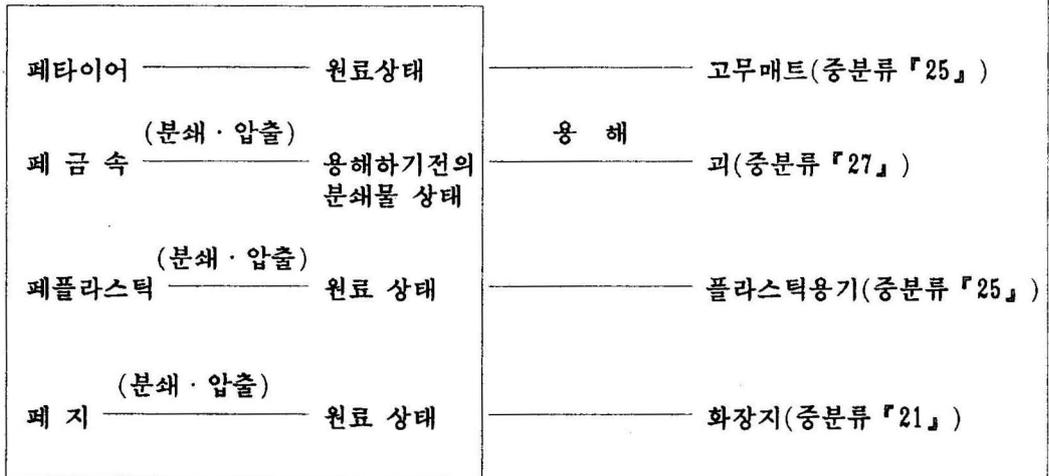


(예 4) 수상기(모니터)와 자기헤드의 분류



(예 5)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 폐금속, 폐플라스틱 등을 제조공정에 직접투입, 사용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전환시켜주는 산업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제품명

- 제품(품목)명은 산업 및 품목분류 책자상의 명칭을 기입하지 않고 해당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입한다.
- 품목명칭은 포괄적인 명칭으로 기입하지 말 것
- 품목명칭이 애매하거나 외국어 일 때에는 공식약자로 표시되는 경우라도 괄호 안에 원어를 써야하며 우리나라 명칭이 있으면 역시 부기 할 것
- 여러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제품출하액이 큰 순서로 기입. 행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11. 제품출하액(매출액) 및 재고액」을 작성 첨부함
- 특히 제품명이 "기타.....제품", "...용품", "...류"등과 같이 복합적인 품목에 해당할 때에는 출하액이 큰 품목 몇개로 세분하여 기입하며, 품목명칭은 사업체 사용명칭에 따르되 용도를 기입한다.

지정수량단위 및 출하량

- 지정수량단위는 반드시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있는 지정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단위가 「※」인 품목은, 조사표의 "수량단위"란에는 「※」로 이기하며, "수량"란에는 수량과 함께 사업체 사용단위를 기입한다.
- 사업체 사용단위가 지정단위와 다른 경우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부록 "단위환산표"에 의하여 수량을 환산하여 기입한다.
- "단위환산표"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관련부서에 설명을 들어 환산하고 그 환산내역을 여백에 기입한다.

< 참고 >

사업체 사용단위가 조사지정단위와 달라 환산할 경우

- 반드시 조사지정단위에 맞게 환산하여 수량을 기재하며, 최저·최고단가도 조사지정 단위당 단가로 기재한다.

음료수(콜라, 사이다)
 ○ 식용정제유 (콩기름, 대두유) 등

조사지정단위 : kl
 사업체사용단위: 상자(Box) (10개/Box당, 1.5ℓ/개당, 1,000원/1.5ℓ인 경우)

- A 음료업체가 1.5ℓ 사이다 5,000 Box를 개당 1,000원에 출하한 경우?

사업체출하수량	조 사 표 작 성 시	
	출 하 수 량 (kl)	지정수량단위당 단 가(원/kl당)
	$(5,000\text{Box}) \times (10\text{개}) \times 1.5(\ell)$ $= 75,000 \ell$ 75kl 기재	$1,000\text{원} \div 1.5 \ell = 666\text{원} / \ell\text{당}$ $666\text{원} \times 1,000 \ell = 666,000\text{원} / \text{kl당}$ 666,000원/kl당 기재

○ 직 물

조사지정단위 : 천m²
 사업체사용단위: yd(길이), inch(폭)
 ※ 1yd = 0.9144m, inch = 0.0254m

- A 직물제조업체에서 44inch직물 200,000yd를 yd당 2,000원~3,000원에 출하한 경우?

사업체출하수량	조 사 표 작 성 시		
	출 하 수 량 (천m ²)	지정수량단위당 단 가(원/천m ²)	
		최 저 단 가	최 고 단 가
200,000yd (44inch)	$200,000\text{yd} = 182,880\text{m}$ $44\text{inch} = 1.1176\text{m}$ $(182,880\text{m}) \times (1.1176\text{m})$ $= 204,387\text{m}^2$... 204천m² 로 기재	$2,000\text{원} \times 1.1176 \times 0.9144 = 2,044\text{원}$	$3,000\text{원} \times 1.1176 \times 0.9144 = 3,066\text{원}$
	... 2,044,000원/천m²	.. 3,066,000원/천m²	

출하액

- 제품의 품목별 국내 판매분과 수출분을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 국내나 외국으로 부터 수입한 상품의 매출액은 11항 연간제품출하액에 기재해서는 안되며 9항의 ⑤구입상품매출액에만 기입한다.
- 품목별 총 합계액은 9항 ①제품출하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수 출 액	(3)연초재고액	(4)연말재고액	(5)지정단위당 출하가격(원)	
조 . . . 백만원	천억 . . 백만원	천억 . . 백만원	최저단가	최고단가

수출액

- 수출액은 수출당시의 원화 교환 비율로 환산 기입한다.
- 수출로 조사하여야 할 수출의 유형
 - o 자기명의 수출
 - o 위탁수출
 - o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 o 기타약정에 의한 수출

- 수출로 조사하지 않고 국내시판으로 조사하여야 할 유형
 - o 국내의 수출용제품 제조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수출용제품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원자재, 반제품 및 부품을 공급하였을 경우는 수출액으로 조사하지 않고 국내시판으로 조사한다.

연초·연말 재고액

- 제품수불명세서와 재고액 계정을 참고하여 완제품의 연초·연말 재고액을 기입한다.
- 상품(구입상품) 재고는 제외한다.
- 12항의 완제품 연초·연말재고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위당 출하 가격

- 사업체 출하단위가 아닌 본조사 지정단위당 최저·최고 출하가격을 기입한다.

12. 재고액												
o 완제품 재고에는 자사생산제품 및 위탁생산제품에 한하며, 수입상품은 제외												
	(1) 연 초						(2) 연 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완 제 품												
② 반 제 품 및 재 공 품												
③ 원 재 료 및 보 조 재 료												
④ 연 료												
합 계												

- 연초재고액은 전년도('94년도) 연말재고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95년 창설업체는 연초재고액이 없음)
- 재고액이 출하액에 비하여 너무 과다·과소할 경우 재확인하여야 한다.
- 당해 사업체의 소유분으로 작업장 외부에 보관중인 것도 포함한다.
- 임가공 사업체는 완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재고액이 없음.

완제품

- 당해 사업체에서 제조완료된 제품 또는 위탁생산제품으로서 연초 또는 연말 현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
- 재고평가액은 생산자 제조원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완제품 연초재고액은 11항 (3)합계와 일치되어야 한다.
- 완제품 연말재고액은 11항 (4)합계와 일치되어야 한다.

반제품 및 재공품

- 당해 사업체가 추가가공을 요하는 미완성 제품이다.

원재료 및 보조재료

- 원재료 및 보조재료의 금액은 구입가격으로 한다.

13.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일련 번호	품목분류번호 (산업 및 품목분류표참조)	제 품 명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원
01								
02								
03								

- 본 항목은 「9항③의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을 제품별로 구분기입한다.
- 동일 품목이라도 제품을 매출하는 경우와 임가공 생산하는 경우의 「산업 및 품목분류」가 다름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 제품출하 쌀 「 15311 101 」
 임가공 쌀 「 15481 100 」

임가공만 하는 사업체에서는 13항의 「임가공 품목별 내역」에만 기입하고 11항에는 기입하지 않음.

- 주요 임가공 산업 -

- 15481 임가공 도정업
- 15482 임가공 제분업
- 15483 임가공 식품냉동업
- 154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임가공업
- 22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다만, 도정업, 도살업, 제분업 등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하여 가공하는 경우는 임가공과 분리하여 제품출하로 조사하여야 함. (11항에서 조사)

14. 유형고정자산	(1)연초 잔액	(2)연간증가액 (취득·대체액)	(3)연간처분· 손해액(건설가 계정대체액)	(4)연간감가상 각액(당기충 당금설정액)	(5)연말잔액 ((1)+(2)-(3) -(4))
①토지					
②건물 및 구축물					
③기계장치,용광로,요					
④차량·선박·운반구					
⑤공구,기구,비품,기타					
⑥건설가계정					
합 계					

-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차량·선박 및 운반구, 건설가계정 등을 말한다.

① 토지

-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와 운동장, 기숙사, 사택 등의 대지
- 운동장, 기숙사, 사택 등이 공장과 지역을 달리하여 있을 경우는 제외

② 건물 및 구축물

- 건 물 : 공장, 기숙사, 기타부속건물 및 승강기, 냉방, 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
- 구축물 : 도로, 철도,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송유관, 조선대, 궤도.

③ 기계장치·용광로·요

- 기계장치 :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설치물
- 요(窯), 로(爐) 등 포함

④ 차량, 선박, 운반구

- 육상운반구 : 자동차, 철도차량 등
- 해상운반구 : 전마선, 화물선, 유조선 등
- 항공기

⑤ 기구, 공구, 비품, 기타

- 1년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과 입목

⑥ 건설가계정

- 영업용 유형고정자산(건물, 구축물, 설비 등)의 건설을 위해 지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완성에 이르기까지 일시 처리하는 계정

< 참고 >

건설가계정

- 건물신축을 위하여 50억원을 3개년에 걸쳐 투자했을 경우(『⑥건설가계정』항목의 기입예)

연도	(1)연간초액	(2)연간증가액	(3)연간처분 및손해액	(4)연간감가상각액	(5)연말잔액
'93년 → 25억원	93년 —	25억원	—	*****	
'94년 → 15억원	94년 25억원	15억원	—	*****	40억원
'95년 → 10억원	95년 40억원	10억원	50억원	*****	0억원

- 위 예에서와 같이 『(3)연간처분 및 손해액의 ⑥건설가계정』이 기재된 경우 어느항목과 관계가 있는가 ?

	(1)연간초액	(2)연간증가액	(3)연간처분 및손해액	(4)연간감가상각액	(5)연말잔액
①토지 ②건물 및 구축물 ③기계장치·용광로·요 ④차량·선박·운반구 ⑤기구·기구·비품·기타 ⑥건설가계정	40억원	A B C D 10억원	E 50억원	*****	0억원
합 계					

- o ⑥건설가계정 (3)연간처분 및 손해액이 나타난 경우는 그 금액이 본계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즉 (E 50억원) ≤ (A + B + C + D) 이어야 한다.]

15.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원
①인	건	비										
②재	료	비										
③기	술	도	입	비								
④위	탁	기	술	개	발	비						
⑤기	계	장	치	및	건	설	비					
⑥기					타							
합					계							

- 사업체에서 '95년 1년간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에 투입한 총비용으로서 연구개발 종사자의 인건비와 대차대조표의 이연자산계정 중 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상의 경상연구개발비, 개발비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① 인 건 비

- 임금과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며 세금, 보험금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② 재 료 비

- 연구활동 수행에 사용한 원료, 시료등 비내구성 소모자재 비용을 기입한다.

③ 기술도입비

- 외부로부터 공업소유권이나 기술의 양수 및 그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기입한다.

④ 위탁기술개발비

- 외부연구기관(대학교, KAIST 등)에 용역을 주는 경우 소요되는 제비용을 기입한다.

⑤ 기계장치 및 건설비

- 연구기기, 기계장치등의 시설구입 및 설치비와 연구소의 건설비등에 투입한 비용을 기입한다.

⑥ 기타 경비

- 건물임차료, 컴퓨터 서어비스료, 여비 및 우편통신비 기타 연구실운영비 등을 기입한다.

16. 주요 사용 원재료명		17. 주요 생산공정	
①	②	① () →	② ()
③	④	③ () →	④ ()

주요사용 원재료명

- 다품목 생산업체는 출하액이 가장 큰 품목의 주요 원재료를 기준으로 기입한다. 약어는 정식명칭을 기입하며 외국어 원재료명은 우리나라 명칭을 부기한다. (원재료명은 각각 7자이내로 기입한다.)

주요 생산공정

- 주요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부터 최종 산출까지 기초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순으로 요약하여 기입한다.
(생산공정은 각 단계별로 5자이내로 기입한다.)

2. 조사표 Ⅱ (광공업 본사용)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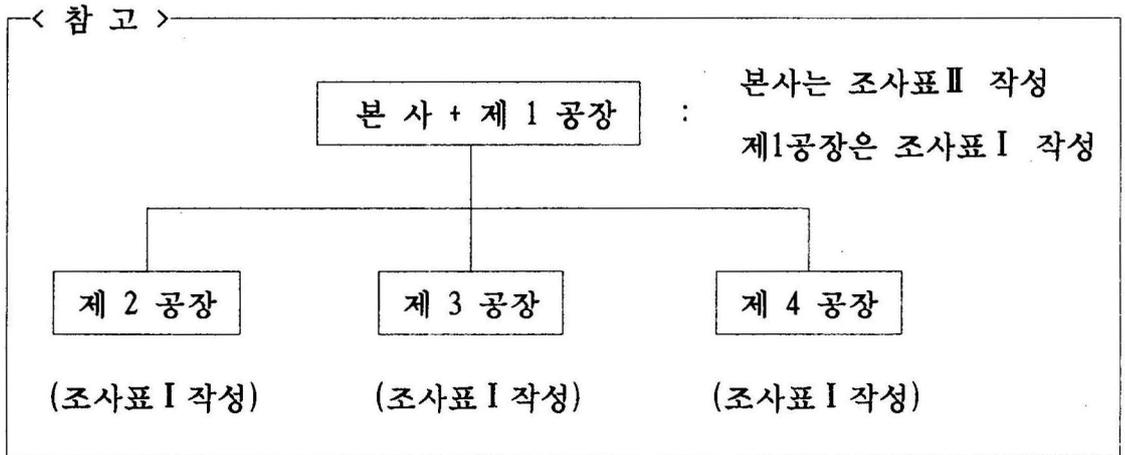
- ◇ 이 조사표의 내용은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본사에 대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1년동안의 실적을 기입한다.
그러나 사업체의 결산시기가 달라 이 기간 동안의 실적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이기간과 가장 가까운 1년간 결산기간의 실적을 기입한다.
- ◇ 이 조사표는 기업체단위(본사+산하공장) 실적을 기입하므로 본사분과 산하 사업체분을 모두 합산하여 기입한다. 또한 광공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본사에서 통합회계 처리하는 본사 산하의 지사, 영업소, 하치장 등의 실적도 합산하여 기입한다.
- ◇ 이 조사표 1~3항은 본사(본점)의 일반사항을 기입하며, 4~10항은 본사와 산하 사업체의 실적을 합산하여 기입하고 11항은 본사실적과 본사관할 사업체별로 실적을 분리하여 기입한다.
- ◇ 이 조사에서 광업이란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는 활동을 말하며, 제조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고 기계 및 장비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 ◇ 조사표상의 부호는 다음 경우를 나타낸다.
 - ★ : 읍·면·동에서 기입
 - *** : 기입하지 않는 부분

일반적인 사항

본 조사표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조사한다.

1. 1기업 다공장 사업체

- 각 공장별로 조사표 I (종사자 5인 이상 광공업사업체)을 작성하고 본사에서 조사표 II (광공업 본사)를 작성한다.
- 공장이 2개 이상이며 본사가 산하 공장중의 어느 한곳과 동일장소에 있는 경우 조사표 I (종사자 5인 이상 광공업사업체)과 조사표 II (광공업 본사용)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2. 1기업 1사업체로서 본사와 공장이 별도 장소에 있는 경우

- 공장에서는 조사표 I 을, 본사에서는 조사표 II 를 각각 작성한다.

항목별 작성요령

1.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전화() -

- ① 본사(본점)명 :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관할하는 본사(본점)의
공식명칭을 기입한다.
전화 :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본사(본점)의 대표적인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 ② 모기업(그룹)명 : 모기업(그룹)이란 법적으로 독립된 2개이상의 기업(복합기업)
들이 자본, 혈연관계등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지
도적(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을 모기업(그룹)이라 하며 공
식명칭을 기입한다.
- ③ 대 표 자 : 본사(본점)의 대표자명을 기입하되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 1명만
기입한다.
- ④ 소 재 지 : 법정동명과 번지 호수까지 기입하며 복층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층까지 정확히 기입한다.
- ⑤ 창설년월 : 본사의 창설년월을 기입한다. 다만 업종변경의 경우는 업종변경이
이루어진 시기를 기입한다.
- ⑥ 결 산 기 : 결산 마감월을 기입한다. (1년에 결산을 2회이상 하는 경우는 해당
월을 모두 기입)

2. 경영조직

- ① 회사법인 : 상법상의 회사법인(주식·유한·합자·합명)을 말한다.
- ② 회사이외의 법인: 법인격이 있는 조합과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함, 따라서 회사법인 및 개인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은 회사이외의 법인으로 분류한다.
- ③ 개 인 : 개인사업체(법인격이 없는 익명의 조합은 개인으로 분류)

3. 자본금 또는 출자금

- 회사법인에 한하여 조사하며 '95. 12. 31 현재 납입완료한 자본금(출자금)총액을 기입한다.

4. 종사자수 (12월말 현재)

-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하며 사무직 및 기타종사자란 생산직 종사자가 아닌 사무직 종사자, 사업체 임직원 및 잡무등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 일일 및 임시종사자는 연인원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12월중의 연인원을 12월중의 조업일수로 나누어 12월중 평균종사자를 구하여 나눈다.
- 관할 사업체중 12월말 현재 휴업중이라도 12월중 1주일 이상 조업을 하였으면 당시의 종사자를 포함하여 기입한다.

- 결산장부를 작성하는 기업의 생산직 종사자는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노무비에 적용되는 자를, 사무직 및 기타종사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명세서상의 임금 및 급여에 적용되는 자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5. 연간 급여액

-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는 제외하고 상여금 및 정액수당을 포함한다. 사업체에서 봉급으로 규정한 급여액을 기입하며 시간제 및 일일고용자에 대한 급여도 포함한다. (7항 ⑦ 급여총액과 일치되어야 한다.)

< 참고 >

- o '95년 노동부 최저임금은 1시간당 1,275원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평균 근로 시간은 226시간(1일 8시간기준)이므로, 1개월간 최저임금은 1,275원 × 226시간 = 288,150원이다.
- o 그러므로 1인당 월평균급여액이 288,150원 ≤ 1인당월평균급여액 ≤ 4,000,000원 범위 밖에 있는 경우는 종사자수 또는 연간급여액을 재확인 한다.
(1인당 월평균 급여액 = 연간급여액 합계 ÷ 12월말 종사자수 ÷ 조업월수)

6.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 ① 제품출하액에는 직접생산 또는 타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 금액을 기입하고, 특히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내국간접세 및 교육세 등이 제외된 금액을 기입한다.

- ② 부산물이라도 이 조사에서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부호』에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는것은 ①제품출하액으로 조사한다.
(예 : 겨, 소맥피 등의 부산물 판매액은 ①제품출하액으로 조사한다)
- ③ 임가공 (수탁제조)수입액은 원재료(또는 중간제품)를 공급받아 제조 가공한 대가로 받은 가공수수료 수입액을 말한다.
- ④ 수리수입액은 타 사업체의 물품을 수리하고 받은 수입액을 기입한다.
(단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등의 수리수입액은 ①제품출하액으로 조사한다)
- ⑤ 구입상품매출액은 사업체가 직접 제조가공한 제품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한 상품과 타 사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 또는 단순 포장하여 판매한 금액을 기입한다.
- ⑥ 구입상품 매출원가는 판매하기 위하여 구입한 상품의 구입원가를 기입한다.
(재고 제외)
- ⑦ 임대수입액은 영업외 수입으로서 사업체가 소유한 토지, 건물 등의 유형고정 자산을 임대하여 주고 받은 수입액을 기입한다.

7.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 명세서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내역중 같은 항목은 합산하여 기입한다.

- ① 원재료비 : 주재료와 보조재료 등 제품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료 및 재료비를 포함한다.

- ⑦ 급여총액 : 생산직, 사무직, 임원, 임시 및 일고(日雇)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 및 급료를 포함한다. (단, 퇴직금과 복리후생비는 제외한다.)
- ⑫ 세금공과금 : 내국소비세를 제외한다.
- ⑭ 기타 경비: 전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광고선전비, 운반비, 보험료, 접대비 등을 포함하나, 영업의 비용 및 특별손실은 제외한다.

8.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사업체에서 '95년 1년간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활동에 투입한 총비용으로서 연구개발 종사자의 인건비와 대차대조표의 이연자산계정중 연구개발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상의 경상 연구개발비, 개발비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9. 재고액

- 재고액은 제품재고(구입상품은 제외)를 기입하며, 위탁생산을 위해 타사업체에 지급한 원재료 및 위탁생산한 제품을 포함한다.

10. 유형고정자산

- 사업체가 소유한 모든 유형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기입한다.

(1) 연초잔액

- o '95. 1. 1일 또는 '94. 12. 31일 현재 잔액

(2) 연간취득액

- '95. 1. 1~'95. 12. 31동안 신규·중고 취득액을 포함하며, 건설가계정의 대체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의 증가액도 포함하여 기재한다.

(3) 연간 처분 및 손해액

- 매각, 양도 및 재해 등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4) 연간 감가상각비

- '95년 당해년도 분만 기입하며 감가상각 총당금 누계액을 기입하여서는 안됨.

(5) 연말잔액

- '95. 12. 31 현재의 유형고정자산 총액을 기입한다.

11. 본사 및 관할사업체 내역

- 본사와 본사관할의 모든 사업체를 기입한다.
- 본사 및 사업체별로 기재하되 사업체별 분리가 어려울 경우 출하액, 종사자수, 유형고정자산규모 등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비율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 본사분을 포함한 사업체별 종사자, 급여액, 제품출하액, 유형고정자산 연말잔액의 합계는 각각 4항, 5항, 6항 ① 및 10항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한다.
- 관할 사업체별 작성내역은 동일 조사기간에 사업체별로 작성되는 조사표[I]의 해당 항목 작성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공장간 내부거래가 있으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Ⅳ. 사업체명부 종류 및 사업체고유번호 부여요령

1. 사업체명부 종류

- '95년기준 광공업통계조사용 사업체명부에는 실사용 사업체명부와 통계청 송부용 사업체명부 등 2가지 종류가 있다.

가. 실사용 명부

- o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광공업통계조사 대상사업체 명부이며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통해 작성된 명부와 대조하여 누락된 사업체를 추가보완하여 실제 조사용 명부로 활용한다.

나. 통계청 송부용 명부

- o 통계청에서 실사용 명부와 동일하게 제공하는 광공업통계조사 대상 사업체명부 관련자료이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실사결과 조사대상사업체의 추가·제외 또는 내용 (대표자명, 산업분류, 종사자 등) 변경사항을 최종 보완하여 통계청에 제출하는 명부로서 차기조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2. 사업체명부의 구성내용

- 사업체명부(실사용, 통계청송부용)는 [사업체용(조사표Ⅰ)
본 사용(조사표Ⅱ)] 로 구분되어있으며,

특히, 사업체용(조사표Ⅰ) 명부의 구성내용은

- ① 전년도에 조사표가 작성된 사업체, ② '95년 생멸통계조사에서 신규발굴된 사업체, ③ 관리대상 사업체순으로 출력되어 있으며, ④ '96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추가발굴된 사업체를 추가등재할 수 있도록 빈줄여백을 추가하였다.

3. 정리 및 보완요령

가. 전산번호 및 사업체고유번호 부여요령

(1) 명부번호

- 통계청에서 배부한 통계청송부용 사업체명부에 기재된 번호를 말한다.

(2) 전산번호

- 전산번호는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표가 작성된 사업체에 대해서만 사업체 명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새로이 부여한 번호를 말함.
- 따라서 전산번호는 기존의 명부번호와는 관계없이 중복이나 결번없이 부여해야 함.

※ 조사된 사업체수 = 맨마지막 전산번호

(3) 사업체고유번호 기입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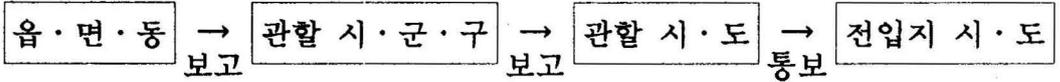
- 사업체명부상 사업체고유번호와 조사표상의 사업체고유번호가 반드시 일치되는가 확인해야 한다.
- 전입사업체의 경우는 전출지 사업체명부에 등재된 고유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그대로 기입해야 함.
- 누락사업체의 경우는 시·도에 보고하여 중복, 전입여부 등을 확인한 후 통보받은 사업체고유번호를 기입한다.

나. 변동사업체 보완

<정리 및 보완시 유의사항>

- 타 사업체에 착오기입하거나 해당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변동사항의 정정은 적색으로 변경된 부분만을 횡선으로 긋고 상단여백에 적색으로 정정 기입한다.
- 전입·누락 등의 추가는 흑색 또는 청색을 사용한다.
- 변동사업체는 적색으로 변동년월, 변동부호, 통신란만 정리한다.

○ 타 시·도로 진출된 경우



※ 시·군·구 및 시·도는 전입된 사업체 및 관내이전 사업체가 빠짐없이 조사되도록 조치하고, 조사표류 접수시 조사여부 및 고유번호 이기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함.

(2) 추가사업체의 경우

- 추가사업체
 - 전입: '95년중 조업실적이 있는 사업체가 타 행정구역에서 전입된 경우(행정구역 착오로 인한 경우도 전입처리)
→ 전입지에서 조사표 작성
 - 누락: '95. 12. 31 이전에 창설된 사업체가 명부에 누락된 경우 → 조사표 작성
 - 기준적합: 종사자수가 5인미만 이었던 사업체가 5인이상으로된 경우 → 조사표 작성

○ 행정구역 개편 및 착오에 의한 다른 읍·면·동 소재 사업체처리

-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동된 경우 변동부호를 기입하지 않고 분리된 행정구역별로 조사하고 송부용 사업체명부 정리시 통신란에 사유기록
- 착오 등으로 타 읍·면·동 소재 사업체가 등재된 경우에는 진출로 처리하되 명부를 발췌 기입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라. 사업체명부 부호 및 용어해설

용 어 해 설

변동내용및부호	변 동 내 용 의 정 의
휴 업(03)	사업체 공장설비는 정상적인 상태이나 가동되지 않는 경우
폐 업(08)	생산설비와 시설을 완전 철거했거나 기타 사유로 생산활동 및 생산설비의 재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전 입(01)	행정읍·면·동경계를 달리하여 현재읍·면·동으로 이동된 경우
전 출(02)	현재의 행정읍·면·동에서 다른 행정읍·면·동으로 이동된 경우
기준미달(04)	종사자 5인이상으로 조사되던 사업체가 5인미만으로 된 경우
소재불명(06)	사업체소재지를 해당 행정읍·면·동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업종변경(07)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및 제조업의 증분류를 기준으로 기존 시설 및 생산품목이 변경된 경우
대 상 외(09)	사업체명부에 등록 기재되었으나 광업, 제조업이 아닌 타 산업 사업체로 판명된 경우
명부누락(13)	종사자 5인이상 광공업사업체가 설립되어 상당기간 가동되고 있었으나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체인 경우
명칭변경(15)	기존 광공업사업체명이 다른 명칭으로 바뀐 경우
소재지변경(16)	동일 행정 읍·면·동 경계내에서 광공업사업체가 이동된 경우
합병합산(18)	2개 사업체가 한개의 사업체로 흡수 통합되는 경우 (※ 이때는 사업체명칭 변경이 나타남)
재 가 동(19)	휴업중인 광공업사업체가 생산활동을 재개한 경우
기 타(14)	지정된 변동내용 이외의 사항(※ 구체적으로 기입)

마. 사업체명부 정리 요령

변동예시[부호]

↓

폐업 [08]

휴업 [03]

전출 [02]

소재지변경 [16]

업종변경 [07]

기준미달 [04]

대상의 [09]

재가동 [19]

명칭변경 [15]

소재불명 [06]

조직형태 [14]

사업체구분 [14]

전화번호 [14]

종사자수 [14]

산업분류 [14]

PAGE = 1

광공업 사업체명부(통계청 송부용)

행정구역분류부호 : 11 - 010 - 13 행정구역명: 서울 종로구 사직동 담당: 전화: () -

전산 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체명	전화번호	법정동리 번 지	변동 부호	변동 년월	조 직	구 분	창설 년월	종사 자수	산 업 분 류	전출입 전 행정구역	통 신 란	명부 번호
0001	1100014	(주)범신사	720-9786	백산동 168	16	9501	1	2	6606	34	22212		소재지 변경	0001
0002	1129052	서라벌인쇄(주)	732-1851	내자동 198				1	2	6205	56	22211		0002
0003	1148273	극동정유(주)	722-6300 735-6300	내자동 223	14	9512	1	1	6411	1346	23210		전화번호 변경	0003
	1100038	현대문화인쇄	737-5919	사직동 89	08	9510	3	2	8607	6	22211		폐업	0004
0004	1100024	광공인쇄(주)	734-1234	적선동 791		9508	1	2	5706	26	22211		명칭 변경	0005
	1100021	문성인쇄(주)	738-7434	사직동 311-9	02	9510	1	2	7304	42	22211	1123051	강화사동전출	0006
0005	1100018	호문사	737-3224	적선동 20			3	2	7211	5	22212			0007
	1100020	(주)문학사상사	733-4303	적선동 80	03	9507	1	2	7209	39	22122		휴업	0008
0006	1100010	요나단	722-3026	체부동 41			3	2	9106	5	18122			0009
	1100013	신우인쇄(주)	737-7151	필운동 278-6	04		1	2	7305	13	22211		기준미달	0010
0007	3100199	경기인쇄사	720-1495	적선동 80-4	이	9509	1	3	9011	27	22130	3116051	경기인쇄사 이전 전입	
0008	1197000	부산은행(주)	998-5786	필운동 174-2	13	9506	1	2	9210	20	22211		누락업소인쇄	

누락 [13]

전입 [01]

1. 전산번호 기입은 조사표가 작성된 사업체에 대하여만 결번없이 명부번호순으로 기입함
2. 수정할 사항은 적색볼펜을 사용하여 수정
3. 사업체변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측여백을 활용하여 기재함 『(통신란)』
4. 한 사업체에 변동사항이 2개이상인 경우 기타[14]를 제외한 다른 변동부호를 우선하여 작성함
5. 고유번호 부분은 수정 불가

사업체변동 예시

- 「서울 종로구 청운동」의 사업체가 다음과 같이 변동된 경우

구분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비 고
전출	11-48273	극동정유(주)	(11-230-51) 강남구 신사동으로 전출
폐업	11-00021	문성인쇄(주)	
전입	11-00088	광공산업(주)	(11-230-64) 강남구 역삼1동에서 전입
누락	11-95001	기초산업(주)	

< 사업체명부 정리 >

광공업사업체명부(통계청송부용)					
행정구역분류부호:11-010-51, 행정구역명:종로구 청운동, 담당:홍길동, 전화:					
전산번호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통신란	명부번호	
0001	1100014	(주)범신사			0001
0002	1129052	서라벌인쇄(주)			0002
	1148273	극동정유(주)	전출		0003
0003	1100024	휘문인쇄(주)			0004
	1100021	문성인쇄(주)	폐업		0005
0004	1100088	광공산업(주)	전입		
0005	1195001	기초산업(주)	누락		

출력되는
부분

전입 및
누락사
기업체
기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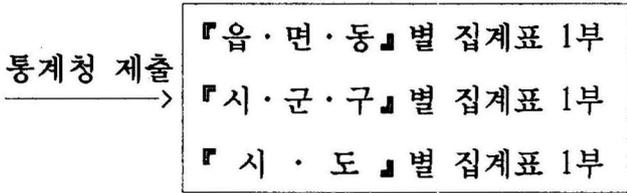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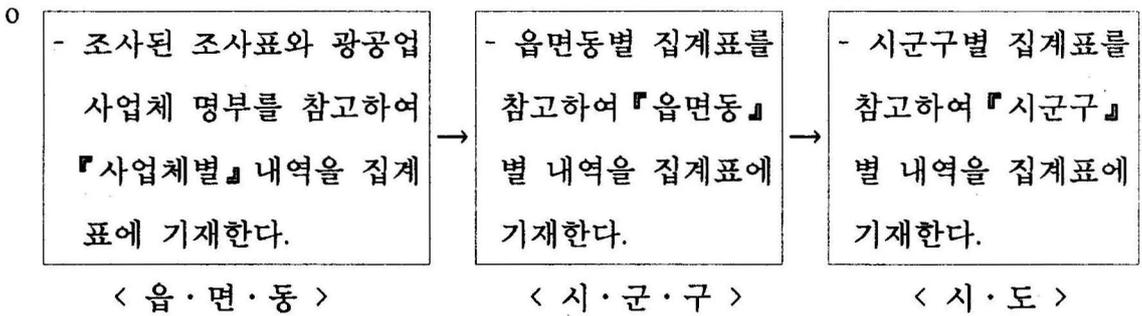
< 조사표 난외사항 기입요령 >

- 행정구역분류부호 : 광공업사업체명부상 행정구역분류부호(11-010-51)가 '95. 12. 31 현재의 행정구역분류부호 인가를 확인한 후 기입한다.
- 전 산 번 호 : 조사된 사업체에 대해서만 부여된 전산번호를 기입한다. (조사된 사업체수 5개 = 맨 마지막 전산번호 0005)
- 사업체고유번호
 - 명부상 고유번호를 그대로 이기한다.
 - 사업체명부정리 예시에서 광공산업(주)의 전입지인 종로구 청운동(1101051)에서는 전출지인 강남구 역삼 1동(1123064)으로 부터 기존의 광공산업(주)의 사업체고유번호를 통보받아 이기하고 전출업체인 극동정유(주)의 사업체고유번호는 전출지인 강남구 신사동으로 통보한다.

V. 조사결과 집계표[조사표 I]

일반적인 사항

- 실시조사 및 조사표의 내검이 끝나면, 조사표에 의거 『조사결과 집계표[조사표 I]』를 작성한다.
- o 『집계표』는 2부씩 작성하며 1부는 작성기관에서 보관하고 1부는 통계청에 제출한다.



작성 요령

1995년기준 광공업통계조사 조사 결과 집계표 [조사표 I]

행정구역 분류부호	행정 구역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 - - - -			

작성자	인
-----	---

①사 업 체 고유번호 (행정구역 분류부호)	②전산번호 (사업체수)	③사업체명 (행정구역명)	④산업분류 (조사표[I] 상 단)	(7항) ⑤종사자수 (월평균)	(8항) ⑥연간급여액 (합 계)
소 계		*****	*****		
합 계		*****	*****		

(9 항)	(10 항)	(12 항)		(14 항)
⑦연간출하액 및 수 입 액 (합계①~④)	⑧연간제조원가 (합계①~⑥)	⑨완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재고액 12(1)의(①+②)	⑩완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말재고액 12(2)의(①+②)	⑪유형고정자산 연 말 잔 액 (건설가계정 제외)

< 『읍·면·동』작성요령 >

- 유고사업체(사업체 명부에는 있으나 조사표 작성이 안된 사업체)는 적색볼펜으로 ①사업체 고유번호, ②사업체명부상 일련번호, ③사업체명, ⑤종사자수(월평균)란에 사업체명부대로 기입하고, ⑨~⑩란에는 유고년월 및 유고내용을 기입한다.

- 『사업체명부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①항~②항)

①사업체고유번호: 누락 및 전입사업체 중 사업체고유번호를 알 수 없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시·도에 보고하여 시·도에서 고유번호의 중복, 전입여부 등을 확인한 후 부여한 고유번호를 통보받아 기입한다.

②전 산 번 호: 누락 및 전입사업체의 경우는 읍·면·동별 사업체명부의 제일 끝번호부터 전산번호를 계속해서 부여한다.

※ 사업체명부, 집계표, 조사표 [I]의 사업체별 순서가 일치되어야 한다.

- 『조사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항~⑩항)

③사 업 체 명: 사업체명부상의 사업체명과 조사표상의 사업체명이 다를 경우는 『조사표』의 명칭을 기준으로 기입한다.

④산 업 분 류: 실제조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 조사표상단의 『산업분류』를 기입한다.

⑤종사자수(월평균): 조사표 『7항(2)조업기간중 월평균종사자수』의 합계를 기입한다.

⑥연간급여액(합계): 조사표 『8항 연간급여액』의 합계를 기입한다.

⑦연간출하액 및 수입액: 조사표 『9항 연간출하액 및 수입액』의 ①제품출하액~④수리 수입액의 합계를 기입한다.

⑧연간 제조원가 : 조사표 『10항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①원재료비 + . . . + ⑥수선비까지의 소계를 기입한다.

⑨ 완·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재고액 : 조사표 『12항 재고액(1) 연초재고액의 (①완제품 + ②반제품 및 재공품) 재고액을 기입한다.

⑩ 완·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말 재고액 : 조사표 『12항 재고액(2) 연말재고액의 (①완제품 + ②반제품 및 재공품) 재고액을 기입한다.

⑪ 유형고정자산 연 말 잔 액 (건설가계정 제외) : 조사표 『14항 유형고정자산(5) 연말잔액』 중 건설가계정 연말잔액이 제외된 (14항(5) 연말잔액합계 - 건설가계정 연말잔액) 금액을 기입한다.

< 시·도, 시·군·구 작성요령 >

	시 · 군 · 구	시 · 도
① 사업체 고유번호 (행정구역 분류부호)	- 시·군·구 내의 『읍·면·동』 별 행정구역 분류부호(7자리)를 기재한다.	- 시·도내의 『시·군·구』 별 행정구역분류부호(5자리)를 기재한다.
② 명부상 일련번호 (사업체수)	- 『읍·면·동』 별 사업체수를 기재한다.	- 『시·군·구』 별 사업체수를 기재한다.
③ 사업체명 (행정구역명)	- 『읍·면·동』 별 행정구역명을 기재한다.	- 『시·군·구』 별 행정구역명을 기재한다.
④ 산업분류	- 기재하지 않음.	- 기재하지 않음.
⑤ 종사자수 ⑪ 유형 고정 자산연말잔액 (건설가계정 제외)	- 『읍·면·동』 별 합계를 기입한다.	- 『시·군·구』 별 합계를 기입한다.

※ 『조사결과 집계표』는 전산입력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기집계하여 자료의 수준점검 및 조사결과 속보공표를 위한 결과요약표이므로 『집계표』작성시 사업체고유번호, 행정구역분류부호 및 기타항목들의 기입누락·오류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Ⅵ. 추가 및 전출사업체 명부 작성

1. 작성기관 및 대상

가. 작성기관 : 읍·면·동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시·군·구, 시·도를 거쳐 통계청에 제출)

나. 대 상 : 광공업 사업체중
(01) 전입사업체
(02) 전출사업체
(13) 누락사업체

2. 기입요령

가. 전산번호, 사업체명, 현소재지, 전화번호, 종사자수는 보완된 『통계청 송부용 사업체명부』에서 해당 사항을 그대로 이기한다.

나. 사업체고유번호(종사자 5인이상 광공업사업체 대상)

- 전입사업체

전입사업체의 고유번호는 상급기관 (시·도, 시·군·구) 등을 통해 전입전소재지 읍·면·동에서 통보받아 기입한다.

- 누락사업체

시·도를 통해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부여된 사업체고유번호를 기입한다.

- 전출사업체

『통계청 송부용 사업체명부』에서 이기한다.

다. 생산품명

- 작성된 조사표상의 제품란에서 주요생산품목명을 발췌 각각 1~2개 기입
- 수탁생산(임가공)업체는 임가공품목을 기입한다.

라. 구 분

전입, 전출, 누락의 해당 란에 “○” 표 한다.

마. 비 고

전입(전출) 사업체의 경우 반드시 전입전(전출후) 소재지를 기입

Ⅶ. 내용심사 총괄표

- 실지조사 및 내검이 완료된 이후 조사결과 집계표를 참조하여 『시·군·구』 및 『시·도』별로 작성한다.
- 전년 조사결과 자료와 비교하여 항목별로 증감내용을 분석하여 변동사항들이 정확히 반영되어 조사되었는지 점검한다.
- 증가요인란에는 시·군·구별로 항목별 증감요인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작성한다.

Ⅶ. 기타 사항

1. 조사용품

가. 사업체 조사용(조사표[Ⅰ]) 명부 및 표지

- 통계청 송부용 사업체명부 및 표지
- 실사용 사업체명부

나. 본사 조사용(조사표[Ⅱ]) 명부

다. 조사표[Ⅰ], [Ⅱ] 및 표지

라. 각종 서식

- 조사결과의 집계표
- 추가(전입·누락), 전출 사업체명부
- 접수대장

마. 조사요령서

바. 조사협조의뢰 공문

사. 『산업 및 품목분류표』 책자

- 조사원용
- 종사자 50인이상 사업체용(증분류별 소책자)

2. 각종 서식작성시 유의사항

행정구역분류부호

가. '95. 12. 31 현재

- 조사표[Ⅰ], [Ⅱ] 난외사항의 행정구역분류부호는 '95. 12. 31 현재로 기입한다.

나. 조사기간중 변경된 경우

- 『광공업 사업체명부 표지』, 『조사표[I], [II]표지』, 『조사결과의 집계표』, 『추가(전입·누락), 전출사업체명부』, 『접수대장』, 『내용심사 총괄표』에는 변경된 행정구역분류부호를 기입한다.

광공업 사업체명부 표지

행정구역분류부호	행 정 구 역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된 사업체수	명 부 상 사업체수	추가된 사업체수 (전입·누락 기준적합)	감 소 된 사 업 체 내 역								
			계	전 출	휴 업	기 준 미 달	소 재 불 명	폐 업	대상외	기 타	
㉔+㉕-㉖	㉕	㉕	㉕								
비 고											
명부정리자 (인)			시·군·구 확인자 (인)								

- 조사된 사업체수 (㉔+㉕-㉖)
 - o 조사대상업체수에서 조사표가 작성되지 않은 업체를 제외한 업체수
- 조사대상 사업체수 (㉔+㉕-㉖)
 - (1) 명부상 사업체수: 사업체명부상 종사자수 5인이상으로 출력된 사업체수
 - (2) 추가된 사업체수: 사업체명부 보완과정에서 발굴된 전입, 누락된 사업체수
 - (3) 감소된 사업체수: 사업체명부에는 있으나 사업체명부 보완 및 조사과정에서 확인결과 전출, 휴·폐업, 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조사표를 작성할 수 없는 사업체수

< 부 록 >

사업체 결산서 과목과 조사항목 대비표

(조사표 I 기준)

I .	대차대조표(보고식).....	95
II .	손익계산서.....	104
III .	제조원가 명세서.....	109
IV .	기타(부속명세서) 참고사항.....	111

I. 대차대조표(보고식) : 조사항목 5항, 12항, 14항과 관련

제 × (당)기 < 1995. 12. 31 현재 >
 제 × (전)기 < 1994. 12. 31 현재 >

과 목	제 × (당)기 (1995. 12. 31 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전)기 (1994. 12. 31 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1) 당 좌 자 산						
1. 현금과 예금		XXX			XXX	
2.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XXX			XXX	
3.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양도액: XXX)	XXX			XXX		
4. 받을 어음 대손충당금 (할인어음 또는 배서어음: XXX)	XXX			XXX		
	XXX	XXX		XXX	XXX	
5.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어음상의 채권: XXX)	XXX			XXX		
	XXX	XXX		XXX	XXX	
6. 미수금 대손충당금 (어음상의 채권: XXX)	XXX			XXX		
	XXX	XXX		XXX	XXX	

과 목	제 × (당)기 (1995. 12. 31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전)기 (1994. 12. 31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금	액		금	액	
7. 미 수 수 익	XXX			XXX		
대 손 총 당 금	XXX	XXX		XXX	XXX	
8.		XXX			XXX	
(당좌자산계)		(XXX)			(XXX)	
자 산						
(2) 재 고 자 산			12항. 연말재고			12항. 연초재고
1. 상 품	XXX			XXX		
2. 제 품	XXX		12항. (2) 의①	XXX		12항. (1) 의①
3. 반 제 품	XXX		12항. (2) 의②	XXX		12항. (1) 의②
4. 재 공 품	XXX			XXX		
5. 원 재 료	XXX		12항. (2) 의③	XXX		12항. (1) 의③
6. 보 조 재 료	XXX			XXX		
7. 연 료	XXX		12항. (2) 의④	XXX		12항. (1) 의④
8. 저 장 품	XXX			XXX		
9.	XXX			XXX		
(재고자산계)	(XXX)			(XXX)		
(3) 기 타 유 동 자 산						
1. 선 급 금	XXX			XXX		
2. 선 급 비 용	XXX			XXX		
3.	XXX			XXX		
(기타유동자산계)						
유 동 자 산 합 계		XXX			XXX	

과 목	제 × (당)기 (1995. 12. 31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전)기 (1994. 12. 31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금	액		금	액	
II. 투자와 기타자산						
(1) 투자 자산						
1. 장기성예금	XXX			XXX		
2. 투자유가증권 평가충당금	XXX			XXX		
3. 출자금 평가충당금	XXX			XXX		
4. 관계회사주식 평가충당금	XXX			XXX		
5. 관계회사사채	XXX			XXX		
6. 관계회사출자금 평가충당금	XXX			XXX		
7. 투자부동산	XXX			XXX		
8.	XXX			XXX		
(투자자산계)						
(2) 기타 자산						
1.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XXX XXX	XXX		XXX XXX	XXX	
2. 장기성발행어음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XXX XXX	XXX		XXX XXX	XXX	
3. 주주·임원·종업 원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XXX XXX	XXX		XXX XXX	XXX	

과 목	제 × (당)기 (1995. 12. 31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전)기 (1994. 12. 31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금	액		금	액	
4. 관계회사대여금	XXX			XXX		
대 손 충 당 금	XXX	XXX		XXX	XXX	
5. 특정현금과예금		XXX			XXX	
6. 전 세 금		XXX			XXX	
7. 전신전화가입권		XXX			XXX	
8. 입 차 보 증 금		XXX			XXX	
9. 영 업 보 증 금		XXX			XXX	
10. 부 도 어 음		XXX			XXX	
11.		XXX			XXX	
(기타 자산계)		XXX				
투자외기타자산합계						
Ⅲ. 고정 자산						
(1) 유형 고정 자산			14항유형고정			14항유형고정
1. 토 지		XXX	14항. (5) 의①		XXX	14항. (1) 의①
2. 건 물	XXX			XXX		
감가상각충당금	XXX	XXX	14항. (5) 의②	XXX	XXX	14항. (1) 의②
3. 구 축 물	XXX			XXX		
감가상각충당금	XXX	XXX		XXX	XXX	
4. 기 계 장 치	XXX			XXX		
감가상각충당금	XXX	XXX	14항. (5) 의③	XXX	XXX	14항. (1) 의③
5. 선 박	XXX			XXX		
감가상각충당금	XXX	XXX	14항. (5) 의④	XXX	XXX	14항. (1) 의④

과 목	제 × (당)기 (1995. 12. 31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전)기 (1994. 12. 31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금	액		금	액	
6.차 량 운 반 구 감가상각충당금	XXX	XXX	14항. (5) 의④	XXX	XXX	14항. (1) 의④
7.공 구 와 기 구 감가상각충당금	XXX	XXX	14항. (5) 의⑤	XXX	XXX	14항. (1) 의⑤
8.비 품 감가상각충당금	XXX	XXX		XXX	XXX	
9.건 설 가 계 정		XXX	14항. (5) 의⑥		XXX	14항. (1) 의⑥
10.시 설 가 계 정		XXX			XXX	
11.미 착 기 계		XXX			XXX	
12.기 타(입목 등)		XXX	14항. (5) 의⑤		XXX	14항. (1) 의⑤
(유형고정자산계)		XXX	14항. (5) 합계		XXX	14항. (1) 합계
(2)무형 고정 자 산						
1.영 업 비		XXX			XXX	
2.특 허 권		XXX			XXX	
3.실 용 신 안 권		XXX			XXX	
4.의 장 권		XXX			XXX	
5.상 표 권		XXX			XXX	
6.광 업 권		XXX			XXX	
7.어 업 권		XXX			XXX	
8.차 지 권		XXX			XXX	
9. (무형고정자산계)		XXX (XXX)			XXX (XXX)	
고 정 자 산 합 계						

과 목	제 × (당)기 (1995. 12. 31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전)기 (1994. 12. 31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금	액		금	액	
N. 이 연 자 산						
1. 창 업 비	XXX			XXX		
2. 개 업 비	XXX			XXX		
3. 신 주 발 행 비	XXX			XXX		
4. 사 채 발 행 비	XXX			XXX		
5. 연 구 개 발 비	XXX		15항의 기술 연구개발비	XXX		
6. 이 연 자 산 합 계	XXX			XXX		
자 산 총 계		XXX			XXX	
부 채						
I. 유 동 부 채						
1. 당 좌 차 월	XXX			XXX		
2. 외 상 매 입 금	XXX			XXX		
3. 지 급 어 음	XXX			XXX		
4. 단 기 차 입 금	XXX			XXX		
(어음상의 채무: XXX)						
5. 미 지 급 금	XXX			XXX		
(어음상의 채무: XXX)						
6. 선 수 금	XXX			XXX		
7. 예 수 금	XXX			XXX		
8. 미 지 급 비 용	XXX			XXX		
9. 미 지 급 법 인 세	XXX			XXX		

과 목	제 × (당)기 (1995. 12. 31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전)기 (1994. 12. 31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금	액		금	액	
10. 관 계 회 사 단 기 차 입 금	XXX			XXX		
11. 주주·임원·종 업원단기차입금	XXX			XXX		
12. 유동성장기부채	XXX			XXX		
13. 선 수 수 익	XXX			XXX		
14. X X 총 당 금	XXX			XXX		
15.	XXX			XXX		
유 동 부 채 합계		XXX			XXX	
Ⅱ. 고 정 부 채						
1. 사 채	XXX			XXX		
사채할인발행차금	XXX	XXX		XXX	XXX	
사채할증 ^{또는} 발생차금						
2. 장 기 차 입 금		XXX			XXX	
3. 관 계 회 사 장 기 차 입금		XXX			XXX	
4. 주주·임원·종 업원장기차입금		XXX			XXX	
5. 장 기 성 지 급 어 음		XXX			XXX	
6. X X 총 당 금		XXX			XXX	
7.		XXX			XXX	
고 정 부 채 합계						

과 목	제 × (당)기 (1995. 12. 31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전)기 (1994. 12. 31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금	액		금	액	
부 채 총 계						
자 본						
I. 자 본 금 (수권주식수: XXX주) (1주당 금액: XXX원)						
1. 보통주 자본금 (발행주식수: XXX주)		XXX			XXX	
2. 우선주 자본금 (발행주식수: XXX주)		XXX			XXX	
자 본 금 합 계			5항의자본금			5항의자본금
II. 자 본 잉 여 금						
(1) 자 본 준 비 금						
1. 주식발행초과금		XXX			XXX	
2. 감 자 차 익		XXX			XXX	
3. 합 병 차 익		XXX			XXX	
4. 기타자본잉여금		XXX			(XXX)	
(2) 재평가 적 립 금		XXX			(XXX)	
자 본 잉 여 금 합 계						
III. 이 익 잉 여 금 (또는 결손금)						
1. 이 익 준 비 금		XXX			XXX	
2. 기업합리화적립금		XXX			XXX	

과 목	제 × (당)기 (1995. 12. 31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전)기 (1994. 12. 31현재)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금	액		금	액	
3. 재무구조개선적 립금		XXX			XXX	
4. x x 적 립 금		XXX			XXX	
5. 당기말미처분이 익잉여금 (또는 당기말미처 리 결손금)						
가. 수정후전기이월 이익 잉여금 (또는 수정후전기 이월결손금)	XXX			XXX		
나. 당 기 순 이 익 (또는당기순손실) 이익 잉여금 합 계	XXX	XXX		XXX	XXX	
IV. 자 본 조 정						
1. 주식할인발행자금						
2. 배당건설이자						
3. 자 기 주 식						
4. 전 환 권 대 가						
5. 신주 인수권대가						
6. 해외사업 환산차						
7.						
자 본 조 정 합 계		XXX		XXX		
자 본 총 액		XXX		XXX		
부 채와 자 본 총 계		XXX		XXX		

II. 손익계산서(1995. 1. 1~1995. 12. 31) : 조사항목 8항, 9항, 10항과 관련

과 목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비 고
I. 매출액			9. 연간출하액(매출액) 및 기타수입액	
1. 제품 매출액	XXX		9항의 ①	
2. 상품 매출액	XXX		9항의 ⑤	
3. 폐품 판매액	XXX		9항의 ②	
4. 임가공 수입액	XXX		9항의 ③	
5. 수리 수입액	XXX		9항의 ④	
매출총계		XXX		
II. 매출원가				
1. 기초제품재고액	XXX			
2. 기초상품재고액	XXX			
3. 당기제품제조원가	XXX			
4. 당기상품매입액	XXX			
계		XXX		
5. 제세환급금	XXX			
6. 기말제품재고액	XXX			
7. 기말상품재고액	XXX			
당기매출원가		XXX		
III. 매출총이익 (또는 매출총손실)		XXX		
				*9항의⑥구입상품 매출원가 = 2(기초상품재고액)+4(당기상품매입액)-7(기말상품재고액)

과 목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비 고
N.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 임 원 급 여	XXX	10항의 ⑦ 급여총액 *(1+2+3=8항 ④ 사무직 및 기타의 연간급여액)	
2. 급 료 와 임 금	XXX		
3. 제 수 당	XXX		
4. 퇴직급여총당금전입액	XXX		
5. 복 리 후 생 비	XXX	10항의 ⑧ 퇴직금	
6. 여 비 교 통 비	XXX	10항의 ⑨	
7. 통 신 비	XXX		
8. 수 도 광 열 비	XXX	10항의 ③ 전력비 ④ 용수비로 구분	기입
9. 세 금, 공 과 금	XXX	10항의 ⑫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 지 급 임 차 료	XXX	10항의 ⑩	에서 달리 분류되지
11. 감 가 상 각 비	XXX	10항의 ⑪	않은 경비는 합산하
12. 수 선 비	XXX	10항의 ⑥	여 10항의 ⑭ 기타에
13. 보 험 료	XXX		포함
14. 접 대 비	XXX		
15. 광 고 선 전 비	XXX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6. 보 관 료	XXX		는 제조원가 명세서
17. 견 본 비	XXX		와 같은 경비항목과
18. 포 장 비	XXX		합하여 조사표 10항
19. 경 상 시 험 연 구 비	XXX	15항 기술연구개발비	에 기입
20. 개 발 비	XXX	15항 기술연구개발비	
21. 운 반 비	XXX		
22. 판 매 수 수 료	XXX		

과 목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비 고
23. 대 손 상 각	XXX	10항의 ㉓ 대손상각비	
24. 영 업 권 상 각	XXX		
25.	XXX		
26. 잡 비	XXX XXX		
V. 영 업 이 익 (또는 영 업 손 실)	XXX		
VI. 영 업 외 수 익		9항의 ㉗ 임대수입액	
1. 수입이자 와 할 인 료	XXX		
2. 유 가 증 권 이 자	XXX		
3. 수 입 배 당 금	XXX		
4. 수 입 임 대 료	XXX		
5. 유 가 증 권 처분이익	XXX		
6. 원 가 차 익	XXX		
7. 매 입 할 인	XXX		
8. 외 환 차 익	XXX		
9. 외 화 평 가 이익	XXX		
10. 환 율 조 정 대 환 입	XXX		
11. 보 험 차 익	XXX		
12. 대 손 충 당 금 환 입	XXX		
13. 유가증권평가충당금환입	XXX		
14.	XXX		
15. 잡 이 익	XXX		

과 목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비 고
Ⅶ. 영 업 외 비 용	XXX		
1. 지급이자 와 할인료	XXX		
2. 사 채 이 자	XXX		
3. 창 업 비 상 각	XXX		
4. 개 업 비 상 각	XXX		
5. 신 주 발 생 비 상 각	XXX		
6. 사 채 발 행 비 상 각	XXX		
7. 시 험 연 구 비 상 각	XXX		
8. 사 채 할 인 발 행 차 금 상 각	XXX		
9. 기 타 의 대 손 상 각	XXX		
10. 유 가 증 권 처 분 손 실	XXX		
11. 유 가 증 권 평 가 손 실	XXX		
12. 투 자 자 산 평 가 손 실	XXX		
13. 원 가 차 손	XXX		
14. 매 출 할 인	XXX		
15. 외 환 차 손	XXX		
16. 외 화 평 가 손 실	XXX		
17. 환 율 조 정 차 상 각	XXX		
18. 재 고 자 산 평 가 손 실	XXX		
19. 재 고 자 산 감 모 손 실	XXX		
20. 기 부 금	XXX		
21.	XXX		
22. 잡 손 실	XXX	XXX	

과 목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비 고
Ⅷ. 경 상 이 익 (또는 경 상 손 실)	XXX		
Ⅸ. 특 별 이 익			
1. 고 정 자 산 처분이익	XXX		
2. 투 자 자 산 처분이익	XXX		
3. 상 각 채 권 추심이익	XXX		
4. 재 해 손 실	XXX		
5. 특 별 상 각	XXX		
6.	XXX		
X. 특 별 손 실			
1. 고 정 자 산 처분손실	XXX		
2. 투 자 자 산 처분손실	XXX		
3. 재 할 손 실	XXX		
4. 특 별 상 각	XXX		
5.	XXX		
X I.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또는 법인세차감전손실)	XXX		
X II. 법 인 세 등	XXX		
X III. 당 기 순 이 익 (또는 당 기 순 손 실)	XXX		

Ⅲ. 제조원가명세서(1995. 1. 1~1995. 12. 31) : 조사항목 13항과 관련

과 목	금 액	항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비 고
I. 재 료 비			
1. 기초재료재고액	XXX	10항①의 재료비(당기재료투 입액)=1(기초재고액)+2(당기재 료매입액)-3(기말재료재고액)	* 재료비에는 부재료 및 보조재료를 포함
2. 당기재료매입액	XXX		
3. 기말재료재고액	XXX		
II. 노 무 비			
1. 급 료 와 임 금	XXX	10항의⑦급여총액	
2. 제 수 당	XXX	④ * (1 + 2 = 8항의③생산직 연간급여액)	
3. 퇴직급여총당금전입액	XXX	10항의 ⑧퇴직금	
III. 경 비			
1. 외 주 가 공 비	XXX	10항의 ⑤	*경비에서 달리분류 되지 않은 경비는 합 산하여 10항의 ⑭기 타에 포함 *경비는 판매비와 일 반관리비의 같은항목 을 합하여 조사표 10 항에 기입
2. 전 력 비	XXX	10항의 ③	
3. 연 료 비	XXX	10항의 ②	
4. 수 도 비	XXX	10항의 ④	
5. 복 리 후 생 비	XXX	10항의 ⑨	
6. 여 비 교 통 비	XXX		
7. 통 신 비	XXX		
8. 세 금 공 과 금	XXX	10항의 ⑫	
9. 지 급 임 차 료	XXX	10항의 ⑩	
10. 감 가 상 각 비	XXX	10항의 ⑪	
11. 수 선 비	XXX	10항의 ⑥	

과 목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비 고
12.	보 험 료	XXX			15항 기술연구개발비	
13.	접 대 비	XXX				
14.	구 독 료	XXX				
15.	보 관 료	XXX				
16.	건 본 비	XXX				
17.	포 장 비	XXX				
18.	설 계 비	XXX				
19.	개 발 비	XXX				
20.	운 반 비	XXX				
21.	지 급 수 수 료	XXX				
22.	대 손 상 각	XXX				
23.	차 량 비	XXX				
24.	XXX				
25.	잡 비	XXX	XXX			
IV. 당 기 총 제 조 비 용				XXX		
V. 고정자산등다른계정에 서 대체된 금액				XXX		
VI. 기 초 재 공 품 재고액				XXX		
VII. 합 계				XXX		
VIII. 기 말 재 공 품 재고액				XXX		
IX. 고정자산등 다른계정으 로 대체된 금액				XXX		
X. 당기 재 품 제 조 원가				XXX		

IV. 기타(부속명세서) 참고사항

부 속 명 세 서	광 공 업 통 계 조 사 표 항 목
1. 임금대장 근무상황표	7항 종사자수
2. 제품수불명세서	11항 연간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3. 공정자산명세서	14항 유형고정자산 (2) 연간증가액 및 (3) 연간처분 · 손해액
4. 감가상각충당금명세서	14항 유형고정자산 (4) 감가상각액 (반드시 당해년도분만 기입 : 누계액이 아님)